농활 혁신을 위한
2003농활연대 핵심 일꾼 수련회

시간 : 2003년 3월 21일 오후 2시

장소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진달래관 4층 소강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일정

3월21일(금)　(전체 진행 : 전농 대협국장)

- 14:00　집결
- 14:30　조편성
- 15:30　농정세 강연(전농)
- 16:30　공동체놀이(전여대협)
- 17:30　사례발표1.농활대중화를 잘 실현하고 있는 단위(한총련)
  사례발표2.농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군농민회(전농)
- 18:30　저녁식사
- 20:00　발제1. 농활혁신 총론(전농)
  발제2.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신 방향(한총련)
  발제3.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전여농)
- 22:00　조별토론
- 23:00　종합토론
- 이후 쭉 뒤풀이

3월22일(토)　아침식사 후 귀가

자료집 글 순서

농학연대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신 방향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
모범 사례 자료 - 자주경희대학교 민족한의과대학 모범 사례 글
보충 자료 - WTO(DDA), FTA 전망과 대응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 농가부채 현황과 과제

농학연대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Ⅰ. 농학연대와 농촌활동

농-학연대란 농민과 청년학생의 연대운동을 통해 민족민주전선, 조국농업사수전선 확대강화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위한 통일전선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그 중 변혁운동의 핵심주체세력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 농-학 두 주체가 연대하여 상호 역량의 강화와 정치적 연대를 통한 전선운동 강화에 복무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과 학생이 함께 농업을 사수하고 이것을 뼈대로 전계급 계층이 농업사수의 주체로 서 나가게 하는 연대운동이다. 이것은 조국농업 사수의 견지에서 농업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며 전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위한 1차적 토대로 되기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에 토대하여 농민과 학생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조직적인 연대를 [농촌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다. [농촌활동]은 농촌현장에서 농민과 학생이 근로를 매개로 만나 상호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장,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왔다. 농촌활동은 농민에게 있어서 정치의식의 함양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었다. 바쁜일철에 농사일을 도와주는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제반 사회에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나가게 되고 농업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등 모든 민족민주 세력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되었다. 또한 청년학생은 농촌현장에서 농민의 삶을 통해 집단성과 민중성, 계급성을 배우고 보다 변혁적인 관점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되었다.

Ⅱ. 농학연대의 역사(농활을 중심으로)

1. 농-학연대의 시초 - 갑산 화전민 전투

농-학연대! 그 역사는 1930년대 브나로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 농활의 뿌리는 1928년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인 신간회가 일제와 지주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일어났던 갑산화전민 투쟁에 청년학생들 파견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투쟁하는 농민들 속에 들어가 청년학생들은 낮에는 함께 노동하고 밤에는 둘러앉아 토론하며 격문을 쓰는 등, 지금 우리가 벌이는 농활의 내용과 형태를 1928년부터 가져왔던 것이다.
우리가 농학연대의 시초로 알고있는 1930년대의 브나로드 운동과 전후의 계몽운동, 초기 봉사활동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인도주의를 깔고 '사회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구조적인 농촌문제와 모순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1960년대 -1970년대 초반의 농-학연대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향토개척단과 써클중심의 농촌봉사활동에서 의식적이며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농활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농업문제의 본질은 빈곤에 있다고보고 농활의 목표 또한 빈곤타파에 두었다. 이것은 농업문제의 해결은 농민의 나태와 무지를깨고 농업생산성을 높혀 농가수익의 증대를 이룸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활동이었다. 즉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있지 못했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에 팀 농촌활동에서부터 진정한 농활이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기는 정치적으로 유신체제의 등장과 긴급조치라는 엄혹함이 존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민중의 희생을 전제로 한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의 모순이 증폭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상황속에서 학생운동은 비합법 운동의 형태를 띄게되고 이념적으로는 자주, 민주의 이념과 함께 강한 민중지향성을 띄게된다. 농업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간의 모순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모순이며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농민 스스로 주체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게된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으로부터 농민운동의 활성화를 측면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근로보다는 대화와 각 분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활을 진행하게 된다. 다른 한축으로는 학생운동의 존재적 한계인 민중성을 체득함으로써 활동가 개개인의 단련과 팀의 결속력을 강화, 자기운동성 확보를 목표로 준비과정, 본활동, 평가와 후속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단기 활동목표에 의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팀별 지역농촌활동이었기 때문에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나서는 문제에대한 통일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3. 198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80년의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제반 사회운동에 있어 일반대중의 관심과 대중운동 양식의 개발이 요청되었고 학생운동도 일반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운동과 학생의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민중 지향성의 실현이 강력히 요구된다.
이러한 학생운동 내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과학회가 등장하고 과학회의 활성화와 학생운동의 기반으로서의 과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인자 중심의 팀농활을 과의 결집력, 대중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면서 과농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농활추진위원회와 총학생회 등 전체기구가 농활추진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팀농활의 활동방식을 극복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농활대간의 통일성, 대학간 연대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고 농활대간의 지역적 통합과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에대한 고민이 제출되었다.
농민운동의 영역에서는 농활을 통해 농민들이 학생들로부터 선진적 정치의식과 사회경제에대한 구조적 인식을 공유해나감으로서 농민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서는 계기로써 농민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농활은 공히 학생운동 강화와 농민운동 강화에 상호 복무하는 의의가 있음을 농·학 서로가 공유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4. 1987년 전대협의 출범과 농-학연대

70년대 농활이 본격화된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농활이 발전되어오는 과정에서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게된다. 87년 6월항쟁이후 대중중심의 운동이념이 확산되면서 86년 이전의 활동가 중심의 팀농촌활동을 지양하고 학우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적 농활"을 자기사명으로 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이전의 고립성, 분산성을 극복하고 전대협 차원으로 전국에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농활을 수행하게 된다. 수행하는 모습이 농학연대를 막고자하는 적들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농촌사회의 봉건성등으로 하여 농활대원은 마치 전사와 같은 철의규율로 농활을 수행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시기 농활을 전투적 농활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농활은 주력군 연대를 통한 통일전선운동의 한 영역이며 자기운동 및 상호운동 간화에 복무하는 연대활동이라는 관점을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곧 그것의 실천을 위한 조직건설로 외화되는데 그것이 곧 농활공동추진위원회이다. 농활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농활지역 또한 지역·지구 총련과도 연결하여 사업역량의 집중성을 살려 나갔을뿐 아니라 기존의 학생중심의 농활에서 농민 또한 일주체임을 자각하고 상호역량강화에 복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당시 단일한 전국조직으로 건설되지는 못했던 농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89년은 88년의 이러한 성과에 바탕하여 농민학생연대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기본역량을 이루고 있는 농민운동과 학생운동 즉 운동의 이념과 목표를 같이하고 있는 두 주력군 사이의 운동이며 통일전선강화에 복무한다 했을 때 농활이라는 일시적 연대가 아닌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일상적 연대를 조직적으로 해내기 위한 전망을 갖춘 틀거리를 요구하게 된다.
그것이 곧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농민학생 연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다. 88년·89년은 기간 실천속에서 얻은 농활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집약시켜낸것이다. 역사속에 녹아있는 농학연대의 관점과 원칙, 방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실천적으로도 외화되었던 농학연대의 역사에서 일대 도약기였던 것이다.

Ⅲ. 90년대 농-학연대사업 평가

농학연대사업은 80년대 말~9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꽃피우게 된다.
학생들은 87년 6월항쟁 이후의 조직적 결실인 전대협을 보다 대중화하여 전투적 학생회에서 한걸음 더 일진보한 자주적 학생회의 운영원리에 맞게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학우대중을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것을 중심된 목표와 과제로 정하고 농민-학생 연대(농촌활동)을 광범위한 학우대중이 참가하고 지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농민들은 농민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을 건설하고 구체적 시/군단위에서 농민회 건설의 활성화와 농민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주체들인 단비맞은 새싹처럼 속속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각 조직들의 건설과 강화를 토대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되는 농민과 학생들의 자연스런 만남과 연대의 의지는 연인원원 6-7만이 참가하고 실천하는 광범위한 연대의 장, 투쟁의 장을 창출하면서 강고한 연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농학연대에서 빛나는 성과도 많았지만 새세기를 접어든 지금 농학연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시기의 농학연대 성과는 미국과 정권에게는 심각한 타격으로 되는것과 동

시에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연대의 중요성과 연대의 힘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되었다. 그러나 96년 이후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핵심주체의 감소, 정치사상의식의 약화)으로인해 강고한 농학연대의 수준이 일정정도 퇴보하였으며, 농학연대의 양주체가 점점 관성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를 거듭할 수록 정치, 조직성의 약화와 실천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90년대 초창기 농학연대의 전성기(?)를 좀처럼 쉽게 회복하고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단계 농학연대의 최고의 화두는 '농학연대의 정체와 답보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1. 성과

1> 80년대의 반합법, 분산적, 소규모적 농학연대를 벗어나 합법적, 집체적, 대중적인 농학연대를 구축하였다.

80년대 중반 각대학 총학생회 건설투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농촌활동은 80년대 후반까지 실로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그 합법성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엄중한 시기였고 그에따라 '게릴라 농활', 또는 '전투적 농활'이라 불릴 정도로 정권과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전개됨으로 인해 농활대중화를 실현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주체들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학우대중과 농민들속에서 농촌활동은 정당성을 대중성과 정당성을 획득하였으며 마침내 90년대를 맞이하여 실로 감동적인 합법적, 대중적, 집체적 농활의 시대를 개척해 내었다. 이는 농민과 학생들이 일구어낸 정치적, 조직적인 성과로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2>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연대의 틀을 구축하면서 변혁운동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을 창출하였다.

90년대 초 합법적, 대중적 농활을 창출하고 학생, 농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이제 보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농민, 학생간의 정치적,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매시기 농활마다 공동의 정치적 사안을 제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농활준비를 다그쳐 나간 지점과 조직적 연대의 틀로서 전국 농학연추회의를 비롯한 각 도별, 시·군별, 가능한 지역은 면단위까지 농민학생연대추진위원회를 건설해 내었다. 이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으로 되는 것이다.

3> 조국농업 사수전선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였다.

88년 12월 18일 수세폐지, 농축산물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94년 UR 국회비준 저지 및 수입개방 저지투쟁, 그리고 2000년 7월 25일 농가부채 해결 WTO 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전국농민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농민투쟁에 농민과 학생이 언제나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농민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전국민적인 문제임을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내었고 각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4천만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결과 민족자주, 조국농업 사수 전선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4> 전농, 한총련의 건설, 강화

90대초 자주적 학생회의 깃발을 높이들고 대중운동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농활이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였다. 연인원 6-7만이 참가하는 대중적 농활은 그 자체가 학습의 공간, 투쟁의 공간, 단련의 공간으로 되었고 이는 향후 자주적 학생회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민회의 경우 지난 90년 역사에 길이남을 전국적 차원의 단일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특기할 사안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부대인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적, 조직적 성숙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농학연대의 과정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2. 90년대 하반기~현재 농학연대의 현황

1> 현상

◉ 농학연대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부족하며, 있다 해도 농학연대사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
◉ 농활준비교양을 제대로 진행하는 학교와 농민회가 극히 드물다
◉ 농촌활동을 농민, 학생이 공히 대중적,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사상의 문제?
◉ 이전에 가졌던 강고한 규율성, 조직성, 집단성의 기풍이 허물어지고 있다.
◉ 변화된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형식, 내용으로 농활이 구현 되고있지 못하다.
◉ 각 농학연추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됨 → 농활은 수행하는 가운데 저절로
◉ 농학연대사업 농민주체들이 관성에 젖어 있음
◉ 여성농민운동 강화 발전의 과제가 주되게 고민되고 있지 못함

2>현상에 대한 원인진단

①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극심한 물리적 탄압

96년, 97년 한총련에대한 정권의 탄압을 시작으로 이후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상 계속해서 이적단체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고 그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해마다 한총련 대의원들은 수배와 구속을 각오하며 대중들과 함께 다종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하기에는 합법적 공간이 창출되지 못하고 특히 농활기간이면 대표자들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히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다.

②농업경시풍조 조장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대대적인 수입개방과 더불어 전사회적으로 농업경시 풍조를 필두로 농업은 사양산업, 농민은 퇴출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학원내에서는 농촌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치부하여 농-학연대를 막아 나서는 등 정권으로부터의 물리적, 이데올로기 탄압은 현 농촌활동을 조직적이고 집체적이며 정치적인 공간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조성하는 일차적 원인으로 된다 하겠다.

③주체의 문제

□ 주체들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는 무엇보다 각 주체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지 못함

80년대 말, 90년대 초 농활이 활성화 되면서 정립되기 시작한 농학연대의 기본적인 관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과 절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무릇 모든 사업과 투쟁이 전개되는데에 있어서 의의와 목표를 옳게 인식하는 문제는 그 사업과 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그러나 기간 농학연대(농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대의 원칙과 해당시기 연대의 목표와 의의를 옳게 각인하지 못하고 일정정도 일회적인 사업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농학연대를 다그쳐 나가지 못하였다.

이는 90년대 하반기 농학연대가 정체와 답보를 면치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들로부터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위의 현황에서도 보여지듯이 대중적인 농활, 집단성과 규율성을 강화하는 농활, 조직적인 농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농학연대(농활)의 중요성을 각인하는데서부터 나온다.

□ 이와 더불어 매시기 전개되는 농활수행 과정에서 목표와 의의로 되는 부분에 옳게 착목하지 못하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농활이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당시기 중요한 정세의 변화와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기반하여 하나의 공동의 정치적 틀을 형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농활 기간을 다바쳐 가야하겠으나 최근 5-6년간 나타나는 일련의 관성적인 농활의 준비와 수행과정 역시 농민, 학생 양 주체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각인하고 있지 못한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농활을 준비했던 시기를 상기해 보자. 적어도 지금처럼 관성화되고 안일한 모습으로 준비되지는 않았다. 양 조직별 모두 중요성과 각오를 갖고 두달, 석달을 준비하고 만들어내었던 과정이 바로 농활이었다. 그런과정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농활, 승리하는 농활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그런만큼 농학연대가 갖는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해당시기 목표한 바와 의의성을 철저히 각인하고 한층 더 강화된 농학연대가 되도록 양조직의 주체들이 결의해 나서야 하겠다.

④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초창기 농학연대(농활)에서 중요한 의의로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농촌활동의 합법성을 쟁취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의 속에서 80년대 말 농활은 가히 전투였고 게릴라식 농활이 전개되던 과정이었으며 마침내 91-92년을 기점으로 대중적, 합법적 농활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는 농촌활동에 참여하는 학우대중과 농민대중의 절절한 바램이었고 농민과 학생들의 혈연적인 연대에서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연대를 형성해 나가기위한 농민, 학생대중의 지향이었다. 하여 이후 농학연대는 전국농학연추위원회 공간을 통해 조직적 연대의 단초를 열어나갔으며 매시기 농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정치적 지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그러나 96년 이후 이러한 정치, 조직적 지향이 점차적으로 정체의 길을 걷고 있으며 객관정세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내용성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실제 기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옳게 제시하고 실천하는 데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즉 기층 대중이 주인주체가 되는 농촌활동, 농학연대를 옳게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동핵심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못한 지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핵심들이 대중속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 보니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깊이있게 돌아보기 보다는 일정정도 주관주의적 요소와 관료적 사업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⑤여성농민운동 강화, 발전의 과제가 주되게 고민되고 있지 못함

'여성농민회는 농학연대의 한 주체라기 보다는 농촌활동시 여성농민분반 활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는 담당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적인 농학연대는 물론이고 연대사업의 핵심인 농촌활동을 제대로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높이고 실천함으로 농학연대를 새롭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사상·조직·실천사업을 어떻게 엮어낼 수 있을것인가?

Ⅳ. 농학연대운동의 혁신과제

사상 ① 농학연추 ② 대중과 함께 할수 있는 실천사업 ⑤

1>사상혁신을 다그치자

정치적 사상내용을 가지고…

사상혁신의 핵심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선상에서 농학연대운동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학연대운동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인 농민, 농동자, 청년학생 중 농민과 청년학생의 연대운동을 통해 민족민주전선과 조국농업사수전선을 강화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어서 치루어야 하는 형식적인 자세와 관점에서 벗어나 농학연대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의의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농활을 맞이해야 한다.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속에 이 땅 민중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분신자살에 음독자살이 연이어 지고 있는 이 때 농민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의 연대강화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2003년 조국농업의 운명을 걸고 한판 대격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농학연대의 대중적, 조직적, 정치적연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각급단위 농학연추를 강화하자

농민과 학생이 만나 정치적 공동의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연대해 나가는 것이 농학연대이다. 그러자면 해당시기 핵심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정치적 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90년대 초부터 농민과 학생대중의 지향을 옳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학연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각 도, 시·군, 면단위까지 확장해 나가는 발전과정을 겪어왔으나, 96년을 전후하여 전국농학연추의 위상이 일정정도 약화되게 되었다. 즉, 전국농학연추의 결정사항이 각 도, 시·군단위에서 방향성이 틀려진다거나 혹은 제대로 집행, 관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역별 처지와 조건이 다른점이 있겠으나 해당시기 객관정세의 요구와 주체진영의 역량으 타산하여 채택되고 결정된 사항이 기층에서는 취사선택되는 상황이다. 이는 핵심적으로 전국농학연추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전국적 차원의 논의가 책임성 있게 집행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한 요구가 나선다 하겠다. 예를 들어 전국농학연추회의 이전에 사전 도별, 시·군별 논의를 보장한다든지, 학생과 농민들의 사전토론과 고민속에서 전국농학연추를 개최해 나가는 문제 등 다방면적으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3>주체 발굴 강화에 힘을 쏟자

농학연대에서 일대도약은 선차적으로 부족한 주체를 어떻게 세워내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무릇 모든 사업과 투쟁은 이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고 집행해나갈 주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현하 농학연대를 책임질 주체가 부족한 문제는 하루빨리 극복해내야할 과제로 된다.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 전체 일꾼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집단의 힘으로 주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4>일상적 연대를 강화하자 새로운 일상적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 아쉽게 11/13 준비하여 모두 ...

혁신하는 농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담보와 전제는 바로 일상적 농학연대에 있다. 시기별 객관정세의 변화와 대중의식의 흐름을 옳게 착목하고 당면해서 어떤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기층 농민, 학생대중에 서로서로가 의거하는 모습을 창출하는 것 역시 농학연대에서 일대도약을 창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조직적이며, 일상적 연대라고 일컬어지는 연대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5-6년간 농학연대에서 일상적 연대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간 거리의 차이 등을 내세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꼼꼼히 신경쓰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식지 교환이라든가, 유인물 발송, 학보 발송등을 통해 농민, 학생 각 조직이 당면투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으며 조그만 공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틀은 없겠는가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신경쓰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전시기처럼 학교단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형성한다든가, 또는 대동제, 학술제등 이전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일상적연대가 강조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역연대강화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농활이 갖는 중요한 의의와 목표중에 하나로 지역연대강화에 적극 복무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활의 의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농활을 수행하는 전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연대강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객관정세의 요구와 변화된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농활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자

90년대 초반까지의 농활에서 창조적 고민과 실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왔다. 그것은 분반활동과 선전활동, 문예활동, 그리고 대중집회의 공간 등 하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왔었던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5-6년간 농학연대에서는 이러한 지난날들의 창조적이고 소중한 경험들을 보다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핵심일꾼들이 대중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2003년 농활을 준비하면서부터는 보다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농활을 수행해 나갈 요구가 나선다.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중을 당면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나가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업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면한 농학연대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하겠다. 하여 농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 농민대중의 농학연대에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대중속에서 깨우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 구사하는 것은 농학연대에서 가히 사활적인 문제라 하겠다. 대중농활 시행 초기에 주요양식으로 자리잡은 분반활동이 15년이 경과한 있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6>여성농민을 주체로 세우고,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자

협연적 관계 맺음 (일상적 연대에서 결합하게)
농산물 직거래장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농학연대사업의 제 주체들이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여성농민 조직의 확대 발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여성농민회가 농학연대사업의 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의 문제가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보다는 농미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V. 2003년 농학연대사업 방향과 과제

※ 2003년 농업정세는 정세자료 참조

1> 2003년 농학연대사업 목표

① 사상적 목표

-농학연대 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자

② 정치적 목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시키고 조국농업을 사수하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615 공동선언 실현하자.

③ 조직적 목표

-주체를 발굴, 강화하자

-각급 농학연대추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자

2> 핵심 과제

□WTO 개방반대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자

①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9월에 개최되는 DDA협상, 2004년 1월에 시작되는 WTO쌀재협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투쟁은 조국농업사수투쟁의 향배를 가름할 중차대한 싸움임.

②WTO 교육시장개방압력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금도 빈익빈부익부의 문제를 안고있는 이 땅의 교육체계는 가진자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한총련,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들은 WTO교육시장개방반대투쟁에 사활을 걸고 투쟁해야 할 것임.

□대학생은 동맹휴업, 농민은 총궐기로 9월, 11월 민중총궐기투쟁을 성사시켜 신자유주의 광풍을 물리치자

①9월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 11월 서울집중 50만 총궐기가 예정되어 있다.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DDA협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9월 총궐기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 〈민중연대 전선 건설〉

②대학생들은 WTO교육시장개방반대를 내걸고 9월, 11월 총궐기에 맞춰 동맹휴업을 전개하고 농민은 WTO 농산물수입개방 반대, 조국농업사수의 기치를 내걸고 총궐기를 성사시켜내자. 9월, 11월 민중총궐기투쟁과정에서 농학연대의 질을 한단계 상승시켜내자.

③2003년 봄, 여름, 가을농활의 핵심목표를 9월, 11월 민중총궐기투쟁 성사에 맞추자

- 작년 30만농민대항쟁을 성사시켜내는 과정에서 봄, 여름, 가을농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만 호별방문의 역할을 맡기지 않고 농민과 학생이 한 조가 되어 모든 집들을 방문하며 정치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민대항쟁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경험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 농활 준비과정, 본활동, 평가사업 등을 전개할 때 민중총궐기투쟁 성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자. 분반활동, 사랑방좌담회 등의 공간에 지역민중연대와의 간담회를 진행해보도록 하자.

□전농, 전여농, 한총련, 전여대협의 조직적 결의를 모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농활에 새바람을 일으키자

①농활주체들만의 고민과 결의로서는 현재의 답보상태를 극복하기 힘들다. 농활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②사람을 남기는 농활을 전개해야 한다.

모든사업의 성과는 사람으로 남듯이 농학연대사업의 성과도 주체의 발굴,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학연대사업의 현황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들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농학연대사업(농활)과정에서 주체들이 발굴, 강화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차원에서 치밀하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③각급 농학연대추진위원회(농학연추)를 제대로 세우자

농활의 역사속에서 구성되어 발전해 온 농학연추는 남한민족민주운동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만큼 농학연추는 연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틀거리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각 지역과 지역총련에 처지와 실정을 고려해 최상의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각급단위의 농학연추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함을 기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점점 제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농학연추를 제대로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농활의 혁신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④농활준비교양에 최선을 다하자.

준비된 만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농활이다. 현재 농활의 모습을 보면 농활자료 한번 보지도 않고 농활가는 대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생회와 농민회가 협력하여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야 현장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농활이 진행될 것이며,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준비과정이 부실한 학교와 지역의 경우 농활 첫날을 '전체 교양의 날'로 정하여 집중적인 교양과 결의의 자리로 활용해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⑤시군단위안에서 지역배치논의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신 방향

발신 : 한총련 농민국
수신 : 농민학생 연대사업 핵심일꾼 여러분

0. 기본적인 고민

기본적인 고민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농활대(팀)의 소모임화입니다. 농활대의 소속감을 높여내고, 농활대를 널널한 소모임 정도의 수준으로 조직생활을 가져가면서 그 구성원들이 농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총련 농민국의 고민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도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애들이 줄었어요!(대중농활)

줄었습니다. 여름농활 열흘 동안 4, 5명의 농활대가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농활이 끝나고 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10명 안 넘으면 농활 안 받는다. 그러니까 꼭 많이 데려와라." 농활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농활 마을을 못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마다 농활대와 마을 수도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활대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침체, 학생회 공동체의 위기 등 여러 분석과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 풍토가 만연하는 분위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등 객관적인 원인은 그렇다 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평가를 중심으로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농활은 학생들에게는 둘도 없는 민중성, 계급성 교양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강화의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같이 자고, 일하고, 먹고, 씻고, 토론하고, 울고, 부대끼며 지내는 과정은 공동체성, 집단성을 강화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성과는 학생회 강화라는 성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학생회가 약화되면서 농활도 어려워졌지만 학생회 강화 처방의 한 가지 방도로 농활이 주요한 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단위에서 일상적인 농활대 모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활 주체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농활대 전체가 책임지는 농활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주체가 잘 서서 10명 정도 가던 단위가 한 해에 농활을 30~40명 정도까지 꾸리는 일도 있었지만 보통 이러한 단위는 이 주체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농활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농활을 많이 갈 수 있는 형식과 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매년 주체의 실력과 정치사업 능력에 농활 성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농활대 모임은 중요합니다. 농활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농활의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농활의 형태를 "팀농활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짜여진 팀이 농활을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농활대 모임을 잘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농활대로의 소속감이 있게 되고, 농활을 학우들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면 학생회 일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농활 마니아 층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 학우들이 졸업반이 되고, 예비역이 되어서도 농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농활을 가지 못하더라도 출신 농활대에 대한 애정으로 최소한 농활대가 출발할 때 차안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주거나, 뒤풀이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선배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농활대 모임만 잘 된다면 좋은 점은 무궁무진 합니다만 이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체적 관점에서 농활대원 수가 줄어든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② 농활대 모임을 잘 진행하겠다는 주체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③ 농활대 모임이란, 주체 한 명이 아니라 농활대 전체가 농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④ 농활을 계기로 학생회를 강화하겠다는 마음으로 농활대 모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2. 정치농활이 뭐죠?(정치농활)

사랑방 좌담회조차 모르는 농활대가 있습니다. 정치농활을 이제는 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이제는 학생들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민회원들은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운동을 했던 분들이거나 학생운동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젊은 분들은 거의 다 농민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농활대가 농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졌습니다. 정치농활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분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농민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농활대가 들어가 면 농민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 농민회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함께 들어가 면 농민회를 세워내는 과정에 학생들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아직 회원 가입이나 농민분들 전반의 인식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적어졌을 뿐이지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실천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올랐다면 공동 실천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더욱 확보하고 실천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연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내기 위주의 저학번 농활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실천이 가지는 의미는 꽤 클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농촌에 내려와 장날 등에 농민회원들과 함께 쌀 수입 반대 관련 서명을 받고, 유인물을 만드는 등의 공동실천을 합니다. 또한, 농민회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해서 사랑방 좌담회 같은 사업, 마을 순회 사업, 강연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준비해서 무작위 농민 대중을 만나는 사업과 자기 마을의 구체적인 대중들을 만나는 사업을 병행하고 분반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활대 모임이 가지는 역할도 큽니다. 농활대가 농활을 가지 며칠 전에 아무리 교양을 들어도 그 내용을 자기 언어로 만들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진행하는 농활대 모임에서 농업, 농민 문제와 정세 관련 토론을 한다면 더욱 쉽게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농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농활대(팀) 모임을 안착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① 정치농활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의식수준 발전도 있으나 농활대의 수준 저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② 시/군 농민회와 함께 면 지회 건설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각인합시다.
③ 공동으로 준비해서 무작위 대중을 만나는 실천과 마을 정치농활을 병행하는 새로운 정치농활을 만듭시다.
④ 농활대(팀) 모임의 안착화, 활성화가 정치농활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3. 분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분반활동)

청년들이 없어서 청장년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애들이 없어서 아동반을 안 꾸린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이제는 400만 농민이라 불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계속 떠나면서 농촌은 고령화 되고, 아이들은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집니다. 보통 마을에 40대 중후반의 농민분이 가장 젊은 층인 경우도 있고, 30대 후반 노총각이 가장 젊은 분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예전같이 청장년반, 아동반, 학생반, 여농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준비하기에는 마을마다 모두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분반활동이 잘 안되는 문제는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도 존재하고, 다른 한 가지는 분반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업 속에서 노동과 땅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면 분반활동 과정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반활동을 통해 정치농활을 실현하고,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반은 글짓기도 하고, 아동반은 율동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여농반은 김치 담그기, 수지침 놓기 등등 정형에 맞춰서 모든 마을, 모든 분반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분반을 만들 구조가 아닌 곳도 있고, 농활대별로 주체가 모두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마을에 맞는 분

반활동을 창조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은 독거노인반을 신설해서 저녁시간에 찾아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형식으로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반활동의 내용입니다. 일단, 정치농활은 청장년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 관념, 여농반 활동이 여성농민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분반활동이 형식만 여러 가지일 뿐 정작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학번에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이는 농활대원이 아니면 그저 좋은 일, 즐거운 분반활동일 뿐 내용을 담지 못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이름 찾아주기, 아이들과 615 공동선언 받아쓰기 대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반이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농활대 배치와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농활대 모임에서 분반 주체와 분반 대원들(농활대가 10명 이상이면 분반별로 대원들의 배치가 가능합니다.)이 토론하고, 계획해서 분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창조적인 형식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활대 모임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꾸준히 자기가 담당한 분반에 대해 전문화 될 것입니다. 여농반 대원이었던 새내기 OO가 내년 여농반 주체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분반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실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여농반의 경우는 여학생회와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에도 꾸준한 연대가 가지는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① 분반활동이 예년과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② 분반 구성과 형식에 있어서 창조적인 분반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③ 분반활동의 내용적 담보를 위한 여러 인식 전환과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④ 농활대 모임이 전문화된 분반 대원을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4. 왜 등을 기대면 안 되는 거죠?(규율)

보통 우리가 농활을 가서 지켜야 하는 규율들에는 스스로 정한 것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율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침시간 이전에는 벽에 등을 기대지 않는다."입니다. 농활에 있어서 원칙을 구분 짓는 잣대인양 이야기되는 규율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율의 의미는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도 농활대 전체의 합의와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율과 선배들의 정치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융통성 없고 형식적인 분위기에 농활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학우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농활대 운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농활을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규율은 농활대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규율(돌아가면서 그저 하나씩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정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활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율을 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전 농활에서 먼저 작업을 끝내고 오는 사람들이 먼저 쉬고 있었던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면 "먼저 끝난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의 일터로 가서 도와준다."라는 규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규율들을 몇 가지 정해서 꼭 지키는 방향으로 규율은 정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되,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율도 없어야 합니다. 여학우가 한 귀걸이 하나 정도도 어르신들이 보기 싫어하신다는 이유로 "하지 마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농활대 내에서 이런 부분의 토론을 풍부하게 해서 원칙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규율을 스스로 정하고, 꼭 지키면서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농활이 아닌 대중적이고, 원칙적인농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① 형식적인 규율을 무조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② 규율은 꼭 학우들과 함께 정하고, 규율에 맞게 농활을 진행한다.
③ 원칙적인 부분을 잘 인식하면서도 대중적인 농활을 잘 만들어야 한다.

5. 전화라도 한 통화해라!(후속활동)

농활대 모임이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후속활동입니다. 기간에 주체를 뽑고 편지를 모아 보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잘 해보자고 결의를 모아도 다시 모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보는 사람끼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활이 실질적인 연대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속활동과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는 일상적인 연대 활동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깜빡했다'는 말 한 마디로 후속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농활대 중 새내기나 대원 1인을 후속활동 주체로 세우고 후속활동을 진행합시다. 또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농활대 모임을 하게 되기에 그 때마다 후속활동을 점검하고, 일상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계획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식지 발간'이나 '메일 보내기' 등 여러 가지 후속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활 이외의 연대사업(노농학 체육대회라던가, 연대 주점, 장터 등)의 논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후속활동이 보장되고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농활대 모임이 안정적으로 되면 이후 일상 연대활동 등이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으며 직거래 장터를 마을과 과/학부 단위로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활대끼리 주말 농활, 못자리 농활, 일상적인 마을 방문 등 여러 형태의 일상적인 연대 활동들이 벌어질 것이며, 그런 사업들은 끈끈한 혈연적 연대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마을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총화 해라!"는 꾸지람을 이제 그만 들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① 후속활동을 농활대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② 여러 가지 새로운 후속활동에 대한 계획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③ 안정적인 후속활동은 여러 형태의 일상적 연대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활 준비과정에 '모범농활사'
녹두꽃 - 5월말 6월초에 제작 10p도
- 현재배포(모범사례)
「농활모범보고서」
학생회·여성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자료 등...
사전고민..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

■ 들어가며

이제까지 "여성농민회는 농학연대의 한 주체라기보다는 농촌활동 시 여성농민분반 활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는 담당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적인 농학연대는 물론이고 연대사업의 핵심인 농촌활동을 제대로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높이고 실천함으로 농학연대를 새롭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

▪ 여성농민의 현실

6-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정책과 이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촌의 해체를 급속하게 유도해 왔다.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빠져나간 농촌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은 여성농민의 전면적인 생산현장에의 참여를 유도 하였다.

특히, 개방농정이 본격화되는 90년대에는 전통적인 미작중심의 농업에서 시설채소, 과수등 상업농으로 전환되면서 더욱더 여성농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저농산물 가격은 가정경제를 유지하게 어렵게 하면서 농촌지역의 농공단지나 식당등에 여성농민을 내몰거나 더욱더 많은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가는 90년대에도 여성농민은 농가주부, 농촌여성으로 불리워지며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지지 않았다. 여성농민의 조건에 맞는 생산조건과 수단 마련, 농업전문인력으로서의 개발, 모성보호비용 부담 등 그 역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조건은 전혀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철저히 여성이나 개별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최근 가전제품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집안일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남는 시간에 자신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꿈도 못꿀일이다. 왜냐하면 제 값을 못 받는 농산물로 인한 소득의 부족은 결국 자가 노동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최근 여성농민이 조합의 대의원, 이사, 마을의 이장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농민운동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은 농민문제 해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성농민 운동이다. 농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투쟁의 현장에서 여성농민들은 늘 함께 했지만 여성농민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여성농민 역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남편의 활동에 대한 보조자의 위치에 머무름으로써 남성중심의 운동조직안에서도 보조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자주적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을 밝히며 또한 독자적인 여성농민 조직의 건설로 이어졌다.

▪ 여성농민운동의 내용은

첫째, 지배자들의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여성농민에 대한 자주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배자들은 여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노동을 보조노동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매도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복종하도록 강요해 왔다. 진보적 의식의 성장과 여성농민의 활동을 가로막는 봉건이념과의 투쟁은 곧 여성농민이 인간으로 대접받고 생산농민으로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받기 위한 투쟁이다.

둘째, 여성농민대중을 올바른 생산의 주체로 바로 세워내는 것이다.

여성농민은 그동안 허물어져 가는 농업을 지탱해온 절반의 힘이다. 이런 여성농민이 생산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농업생산과 경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여성농민의 의식을 전환시켜내고,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해내는 것이다.

셋째, 투쟁뿐만 아니라 조직활동 전반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은 조직활동의 전반에서 여성농민 회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조직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여성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됨으로 자주적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넷째, 여성농민 대중으로부터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농민회가 늘 여성농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어 표면화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함으로써 여성농민회가 여성농민대중을 위한 조직임을 일반 여성농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변혁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는 운동이다. 또한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함께 전체 운동에 복무하도록 노력한다.

■ 여성농민회의 농학연대 사업의 진단

- 여성농민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농활은 여성농민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조직을 건설하는 초기단계에서 여성농민 활동가들이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조직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마을 순회교육, 선전, 사후 작업등을 진행하는데 이는 여성농민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농민회에서는 여성농민 분반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내올 것을 항상 학생측에 요청하였으나 총여학생회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단위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총여학생회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회 골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활시기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 주체를 세우고 역할을 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농활대(마을)별로는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기는 하나 사전 교양의 부재와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여농반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회도 지역마다 조직 역량의 편차로 인해 단일한 내용으로 연대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운동 지형내에서도 여성농민회를 농학연대의 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여농반 활동이 여농과 여대협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농학연대사업의 기획, 준비, 진행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 여성농민회의 조직확대를 전체 농민운동내에서 합의하면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부분과 이렇게 배치된 농활대의 관리를 비롯한 전 농활기간의 활동을 여성농민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한 지역에서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한 것이다.

■ 여성농민회의 고민지점

- 농학연대사업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상호 역량강화를 목표로 양자의 연대를 공고해 함으로써 전체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실천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높이며 변혁운동의 목표에 더욱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함께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농학연대사업의 제 주체들이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민 조직의 확대발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물론 여성농민회가 농학연대사업의 있어서 주체로 서야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 농민운동의 총량강화라는 내용은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보다는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

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 분반활동의 혁신을 비롯한 농활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정형 창출을 고민함에 있어서, 농학연대사업에서 여성농민회를 주체로 세우는 부분과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혁신과제

농촌활동은 노동력을 통한 근로활동과 분반활동, 마을 잔치등의 여러 활동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노동활동외 다른 활동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적어짐으로 인해 농활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촌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며 중점과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농활을 정체와 답보상태라고 인정하더라도 농학연대사업에서 농활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이유는 농활만큼 농민과 학생이 전면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그 외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농활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본 신뢰를 획득하면서 투쟁사업등에서 더욱더 높은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일반농민에게 더욱더 필요한 문제이다.

- **여성농민회는 현재의 조직수준을 진단하건데 농활을 통한 조직확대가 아직도 유효하며 매우 절실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직적 상황을 상호 인정하면서 농활대의 지역배치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시,군단위 농학연추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농의 농학연추회의 결합을 위해서는 여농 주체의 결의와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학연대의 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학교단위 농학연대사업 주체부터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농반 주체를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 **농활교양시 학생회 골간에서 여성농민회와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여농반 분반활동 교양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농활교양에 배치되어야 한다.**

- **농활주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사업은 특정시기, 특정사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이 고민안에는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도별 조직화 목표 세우고 있음
→ 군여농 조직화!
✓ 분반활동에 대해
→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그 의의성에 대한 파악필요
→ 여성농민현실, ~~역할~~ 여성농민회에 대해...
✓ 마을 여성농민들에게 ~~여~~ 설명할 수 있는 여성농민회에 대한 자료...
✓ 농활계획서 제출시 4자나 함께... → 설문조사등 농민회·여성농민회 내용 함께 제출되어야
< 농민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의 경우 >

노력하는 것이다. 농업생산과 경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여성농민의 의식을 전환시켜내고,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해내는 것이다.

셋째, 투쟁뿐만 아니라 조직활동 전반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은 조직활동의 전반에서 여성농민 회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조직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여성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됨으로 자주적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넷째, 여성농민 대중으로부터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농민회가 늘 여성농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어 표면화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함으로써 여성농민회가 여성농민대중을 위한 조직임을 일반 여성농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변혁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는 운동이다. 또한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함께 전체 운동에 복무하도록 노력한다.

■ 여성농민회의 농학연대 사업의 진단

- 여성농민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농활은 여성농민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조직을 건설하는 초기단계에서 여성농민 활동가들이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조직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마을 순회교육, 선전, 사후 작업등을 진행하는데 이는 여성농민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농민회에서는 여성농민 분반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내올 것을 항상 학생측에 요청하였으나 총여학생회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단위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총여학생회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회 골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활시기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 주체를 세우고 역할을 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농활대(마을)별로는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기는 하나 사전 교양의 부재와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여농반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회도 지역마다 조직 역량의 편차로 인해 단일한 내용으로 연대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운동 지형내에서도 여성농민회를 농학연대의 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여농반 활동이 여농과 여대협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농학연대사업의 기획, 준비, 진행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 여성농민회의 조직확대를 전체 농민운동내에서 합의하면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부분과 이렇게 배치된 농활대의 관리를 비롯한 전 농활기간의 활동을 여성농민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한 지역에서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한 것이다.

■ 여성농민회의 고민지점

- 농학연대사업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상호 역량강화를 목표로 양자의 연대를 공고해 함으로써 전체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실천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높이며 변혁운동의 목표에 더욱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함께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농학연대사업의 제 주체들이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민 조직의 확대발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물론 여성농민회가 농학연대사업의 있어서 주체로 서야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 농민운동의 총량강화라는 내용은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보다는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

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 분반활동의 혁신을 비롯한 농활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정형 창출을 고민함에 있어서, 농학연대사업에서 여성농민회를 주체로 세우는 부분과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혁신과제

농촌활동은 노동력을 통한 근로활동과 분반활동, 마을 잔치등의 여러 활동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노동활동외 다른 활동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적어짐으로 인해 농활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촌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며 중점과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농활을 정체와 답보상태라고 인정하더라도 농학연대사업에서 농활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이유는 농활만큼 농민과 학생이 전면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그 외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농활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본 신뢰를 획득하면서 투쟁사업등에서 더욱더 높은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일반농민에게 더욱더 필요한 문제이다.

- 여성농민회는 현재의 조직수준을 진단하건데 농활을 통한 조직확대가 아직도 유효하며 매우 절실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직적 상황을 상호 인정하면서 농활대의 지역배치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시,군단위 농학연추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농의 농학연추회의 결합을 위해서는 여농 주체의 결의와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학연대의 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학교단위 농학연대사업 주체부터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농반 주체를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 농활교양시 학생회 골간에서 여성농민회와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여농반 분반활동 교양으로서가 아니라 전체 농활교양에 배치되어야 한다.

- 농활주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사업은 특정시기, 특정사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이 고민안에는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농활을 통한 학생회 강화

- *자주 경희 민족한의 농활 모범 총화*

민족한의는 약소단위였습니다. 97년부터 00년도까지 4년 여 동안 학생회가 힘있게 서지 못하면서 대중사업의 기풍은 사라지고 학생회의 위상도 학우들 안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97, 99, 00년도에는 한총련 대의원 탈퇴를 했습니다. 다른 단대가 학자투쟁으로 여러 성과를 얻어 강의실도 바꾸고 수업도 나아질 때 민족한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활대원 숫자도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99년 여름 농활부터는 800학우 중 단 6명이 참여하는 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활이 되었습니다. 97년부터 00년까지 학생회에서 농활을 대중사업에서 제외시켰고 몇몇의 선배들에 의해 겨우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족한의는 많은 것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학자투쟁의 모범을 만드는 곳으로, 학생회실이 언제나 학우들로 북적거리는 곳으로, 단대 총회를 언제나 성사시키는 곳으로, 6명의 농활대에서 세 마을에 60여명이 참여하는 곳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데에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한의의 학생회를 학우들 안에서 대중적으로 복원시키고 대중농활을 만들어 간 과정들의 총화가 동지들과 함께 학생운동 대중화와 대중농활·정치농활을 통한 튼튼한 농학연대의 주춧돌을 놓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학생회 상황에서 01년도에 98학번 중심으로 32대 학생회를 세우게 됩니다. 00년도 한 학기 동안 벌인 등록금 투쟁의 결과로 98학번에 여러 일꾼들이 생기게 되었고 00학번이 학생회와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커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학생회 위상 정립과 우리 단대에 맞는 새로운 기풍 확립, 힘있는 대중 사업 등등의 여러 과제들이 32대 학생회 안에서 논의되었습니다. 32대의 주요 고민은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인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수많은 과제들은 대중 사업을 벌여 가는 과정이 없다면 불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대중 사업으로 농활을 선정하였습니다.

농활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집회 조직화나 다른 사업보다 학우들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적게 주며 정치의식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내내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지속적으로 많은 학우들을 농활이란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농활 기간 동안 참여한 학우들에게 공동체 문화, 집단성을 체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활을 준비하며 주체를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회 핵심사업으로 농활을 선정하고 농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화는 단대 특성에 맞게 동아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풍물패, 노래패를 중심으로 여러 학회에 간담회를 제안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학생회실에 대자보를 크게 써서 조직화 된 사람들을 매일매일 총화 했습니다.

농추위 안에서 조직화와 더불어 그 전에 행해졌던 농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강압적이었던 규율 타파, 공동체 생활을 통한 집단주의 체득, 농활대원들의 민중성 회복 등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농활의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간 첫 봄농활에 30명의 대오가 꾸려졌습니다. 당시에 농활의 정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팀모임이 불가능했기에 규율에 대한 토론은 마을에 도착해 잠을 줄여가며 진행했습니다. 또한 농활 기간 중 농활대원들의 참신한 규율을 과감히 채택했습니다. 단대 특성에 맞게 하루에 두 번 안마해주기 같은 규율도 만들어졌고 아침운동은 기공체조로 대체했습니다. 모두에게 자신들의 날적이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틈틈히 글을 써주는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날적이는 계속해서 학생회실에 비치하고 다음 농활을 갈 때 꼭 챙겨서 자신의 농활 일기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단주의의 구현은 선배들의 모범과 새내기들의 주체적인 모습들 속에서 싹터갔습니다. 흡연을 하는 선배들은 개인적인 흡연을 자체적으로 금하고 담배 피우기 전 흡연자들이 마을회관을 청소하고 간다라는 자신들의 규율을 따로 만들어 모범을 보였습니다. 새내기들은 자기들끼리 호별방문이 어렵다며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서 호별방문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봄농활 속에서 농활대원들은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날적이를 통한 동기와 선후배들과의 진지한 대화, 개인이 모두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만들어졌던 모범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감동들, 마을 형님분들과의 술자리 속에서 자신이 경험

해보지 못한 농촌이라는 공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해졌던 새내기들...

그렇게 봄농활을 끝내고 농추위 안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화두가 던져졌고 여름 농활을 준비하며 00학번들과 농활의 실무에서부터 여러 교양사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인원의 증가로 마을을 하나 더 늘리면서 제기될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진단하고 효율적인 선배들의 배치를 통해 해결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 농활 준비시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농활대장을 00학번으로 정하고 각 마을별로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본과 3,4학년 선배들을 만나며 한방의료단을 더욱 규모있게 꾸려내 고학번 선배들까지도 여름농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두 마을 농활에 봄 농활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봄 농활을 간 새내기가 자신의 친구를 직접 조직화하고 00학번들이 스스로가 주체라는 고민을 시작하며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족한의의 농활은 계속해서 두툼해지는 날적이처럼 성장하는 농활이 되었습니다.

2001년의 네 번의 농활을 모두 마치고 일년 농활 평가와 다음 년 농활 체계 고민을 진행했습니다. 숫적으로 늘어난 농활은 학생회실에 찾아오는 학우들의 수를 몇 배 더 늘게 해주었고 집단주의를 체득한 친구들은 자신의 학번 안에서 집단적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대중농활의 성사는 학생회 강화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학생회 안에서 2002년도 농활은 00학번들이 주체가 되는 농활이었습니다. 농활대장부터 마을대장까지 모두 00학번이 맡고 봄 농활을 수행했습니다. 마을을 두 마을에서 세 마을로 늘리고 대중적인 농활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며 선배들이 준비해서 후배들이 따라가는 농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개인들의 만남을 많이 하지 못하고 역량에 비해 무리하게 마을을 늘리면서 봄 농활은 많은 상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반성과 평가 후 00학번들은 일 학기 종강과 함께 자신들끼리 조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모여 자신들끼리 학습하고 다른 단대의 농활 주체들을 만나 이곳저곳의 모범들을 배우며 여름 농활의 계획을 내왔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매일매일 후배들과 약속을 잡고 일상적인 만남 속의 조직화를 구현해 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00학번들의 활동은 여름농활을 두 주정도 남기고 민족한의에 처음으로 팀 모임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농활 기간 속에 댓거리 문화를 자리잡게 했고 통일, 노동운동 등의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의 댓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대중농활은 학생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한의대 안에 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큰 집회에는 30명 이상 참가할 수 있을 역량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아리들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농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래패와 풍물패는 언제나 새내기들로 넘쳐 났고 동아리 자체의 학습과 집회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대중농활의 길에 한 걸음 내딛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발전에도 학생회는 눈부시게 강화되었고 운동역량은 배가되었습니다.

점점 학생운동이 어려워져간다고 합니다. 학우들이 각자의 삶에 모두가 빠져 다른 것은 못 본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한의대의 대중농활을 만들었던 비결, 학생회가 강화되었던 비결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미쳐 몰랐던 선후배와 동기들과 정이 흠뻑 들어 돌아가는, 사람을 얻어가는 농활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농활입니다. 일기를 쓰고 서로가 글로써 대화하며 자신을 깨나가는 농활입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평가와 평가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 농활입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농민들의 삶을 배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사라는 계급성을 각성시키는 농활입니다.

대중 농활은 단대 내의 집단주의 확산을 통한 운동의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며 농민의 삶에 다가가려는 후배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설 수 있게 합니다.

좋은 토양과 진보성을 띤 학우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활동할 주체 이 모두를 농활을 통해 민족한의는 얻었습니다.

아직은 연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배우고 얻고만 돌아오는 농활이지만 대중 농활의 틀 속에서 제대로 된 연대사업의 정형을 만들 희망을 엿봅니다.

WTO(DDA), FTA 전망과 대응

2003.2

들어가며

농업문제의 본질은 농업이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에 의해 구조조정되어 지고 있으며 그 영향에 따라 농민들의 구조적인 문제들(농가 소득 감소, 농가 부채 급증, 농지 파괴, 협동조합등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의 공격의 선봉은 WTO(세계무역기구)농업협상과 FTA(국가간 자유무역 협정)농업협상으로 우리 농민들의 생명줄은 물론 민족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 협상(한·칠레 자유무역협상,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찾아 보고자합니다.

Ⅰ. WTO DDA 농업협상 전망과 한국농업

1. WTO(세계무역기구)의 출발과 본질

1)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배경 및 과정

① 주요 강대국들은 무역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1947년 제네바에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를 발족하였음.

- GATT는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산물 공급과잉과 재고 처리를 위한 수출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GATT체계로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빠르게 허물기에 부족하자 1986년 9월 GATT회원국 각료들이 우르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 모여 GATT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됨.

- 각 국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계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을 목료로 시작되어 93년 12월 15일 협상을 타결하고 WTO(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였음.

<WTO 체제의 문제점 >

(1) WTO는 비민주적 기구며 강자를 위한 기구이다

(2) WTO는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한다.

(3) WTO는 인간의 생존(식품안전성,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한다.

(4) WTO는 일자리를 빼앗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불평등)를 증대시킨다.

(5) WTO는 국가주권을 위협하고 저개발국의 발전을 저해한다.

(6)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공정하지 못하다.

(7) WTO는 맹목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③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특징은 농산물이 협상대상으로 포함된 것임.

- UR협상 이전에는 농업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식량안보기능) 농촌사회를 유지하고(농촌경제 활성화, 전통문화 보존) 자연환경의 보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며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무역을 논할 때에도 농업은 아예 거론하지 않았음.

그러나 UR협상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출 것, 농업에 대한 지원축소문제(국내보조금 철폐)등이 다뤄진 것임.

< UR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분야 주요 합의사항 >

주 요 항 목	합 의 내 용	
비 관 세 조 치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기준년도 19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관세상당치 계산후 전품목의 관세양허	
관 세 인 하	선진국	개도국
-모든 농산물 평균 감축률	36%	24%
-개별 농산물 최소 감축률	15%	10%
시 장 접 근 량 보 장 -최소시장접근(MMA) -현행시장접근(CMA)	-기준년도 1986~88 평균 소비량의 3%부터 5%까지 매년 균등 증량 -기준년도의 현행 시장접근량 보장 및 확대 유지	
관 세 화 유 예	-특별 조건 충족하 관세화 유예 -선진국: 일본(쌀), 이스라엘(양고기, 전지분유, 치즈) -개도국: 한국, 필리핀(쌀) -유예 기간동안 시장 접근량 보장 및 증량	
기 준 년 도	-1986~88년	
이 행 기 간	-선진국: 1995-2000년(6년간) -개도국: 1995-2004년(10년간)	

2) UR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의 의미

① UR협상의 결과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모든 무역장벽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는 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를 기점으로 WTO(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gation)가 출범함.

② WTO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UR협상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협정과 협상결과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며 회원국간 일어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함.

특히 WTO는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적 사법권과 강력한 집행력, 그리고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협상 대상 또한 포괄적이여서 막강한 국제 무역기구로 자리 잡고 있음.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회원국은 2001년 현재 144개국이 가입한 상태임.

③ 결국 WTO 출범의 의미는 GATT체계의 한계를 넘어 미국 등 제국주의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을 강제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임. 또한 WTO라는 허울좋은 다자간 협상 기구를 앞세워 미국 등 강대국 자본(거대 곡물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약소국, 제 3세계 개도국의 시장과 산업을 장악하려는 것임.

2. WTO 농업개방이 세계 농업에 미친 영향

국 내

※ 우리나라는 이미 UR협상으로 막대한 농업피해를 당함.

1) 농산물 수입의 증가

① UR협정 결과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쌀만이 유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 방식으로 수입됨.

② WTO 출범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증가하여 세계 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③ 축산류의 증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농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한편 사료곡물을 비롯한 곡물류, 과실류(68.7%)와 채소류(156.6%) 또한 매우 높은 증가를 보임.

< WTO전후 농축산물 수입액변동 비교 > (단위 : 백만불, %)

구 분	WTO전 연평균 수입액 ('88~94년 : A)	WTO후 평균 수입액 ('95~97년 : B)	B/A (%)
곡물류	1,371	2,138	55.9
축산류	2,093	2,703	29.1
두 류	321	487	51.5
과실류	196	331	68.7
채소류	62	165	156.6
식물성섬유	695	695	-0.1
기 타	1,747	3,283	88.0
합 계	6,485	9,802	51.2

*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WTO전후 농산물수입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2) 식량자급도 하락 심화

① 농산물 수입증가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식량자급률의 계속적인 하락을 심화시켜 2001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2001년 현재 31.1%에 불과하며, 쌀을 제외한 자급률은 5% 수준임.

② 한국정부의 개방농정, 식량감산정책과 맞물려 곡물재배면적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양곡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식량 자급률을 하락시킴.

< 식량자급률 현황 >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19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100.0
19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19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19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1999	29.4	96.6	67.1	0.1	1.0	9.1	98.8	11.0
20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20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2002

3) 농업보조의 감축

① UR협정 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 보조금은 매년 감축됨에 따라 매년 AMS(보조총액측정치,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의 90%이상이 투여되는 추곡수매제도도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짐.

* AMS (보조총액측정치) : 농업보조정책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을 위해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된 연간 보조수준을 의미함. 즉 감축대상이 되는 품목별, 지원 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임. 매년 계산되는 AMS를 WTO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연도별 쌀 보조금 지급가능액 >　　(단위: 10억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2,034	1,959	1,884	1,809	1,734	1,659	1,584	1,509	1,434	1,359

* 자료: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4) 농산물 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

①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대표적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95년 UR협상 이후 급격한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 변화 추이 >　　(단위: 원)

구분	마늘 (1접)	토마토 (15kg)	수박 (5kg)	감귤 (15kg)	포도 (10kg)	암소 (500kg)	농촌임금 (남)
1980년	5,994	3,312	1,228	5,376	5,847	1,303,865	7,288
1985년	6,353	3,952	1,047	5,285	6,766	1,252,650	9,695
1990년	5,848	9,016	3,461	7,991	8,137	2,262,750	18,563
1995년	7,865	8,936	3,877	16,651	19,224	3,322,590	33,237
1999.3	8,203	6,092	3,124	21,819	12,293	2,127,000	38,213
2000.3	3,912	895	2,629	12,842	12,228	2,698,000	47,239

*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년 5월호)

5) 농가부채 급증과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농가경제 어려움 가중

① UR협정 이행에 따른 쌀 수매 등 정부보조금의 감축이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주요 작목의 가격하락 내지 정체는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곧 바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짐.

② 우리나라 농민들의 호당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다가 1995년부터 증가율이 감소되기 시작해 98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음.

이 결과 도시가구소득에 대비한 농가소득의 비율이 94년 99%에서 00년에는 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③ 특히 지난 10년동안 정부 통계로 파악한 농가부채만 해도 약 259%가 증가했으나 소득은 약 65%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쳐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가부채의 급증은 농민들의 농촌이탈과 야반도주,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있음.

< 농가소득의 추세 >　　(단위: 천원)

	1990	1996	1997	1998	1999	2000	'96/'90	'00/'96
농가소득(A)	11,025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11배	0.99배
농외소득비율(%)	25.8	32.1	36.9	34.0	31.5	32.2	-	-
도시가구(B)	11,320	25,832	27,488	25,597	26,697	28,643	2.28	1.11
상대소득(A/B,%)	97.4	90.2	85.4	80.1	83.6	80.6	-	-

* 자료 : 농가소득의 정책과 과제 , 오내원 2001. 7.

<도시근로자와 농가간 소득 비교 >　　(단위 : 천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도시근로자 년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2)	20,416	22,933	25,832	27,448	25,597	26,697	28,643	31,500
농가소득 (B: 전체평균)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A/B	1.00	1.05	1.11	1.17	1.25	1.20	1.24	1.32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 농가교역조건 지수 감소>

	1995	1996	1998	2000	2001	2002년 11월
농가판매가격 총지수(A)	100.0	105.2	101.9	109.6	116.4	-
농가구입가격 총지수(B)	100.0	104.3	118.0	127.5	139.4	-
농가교역조건(A/B)	100.0	100.9	86.4	86.0	83.5	81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 UR협정 전후 농가부채 증가 현황 >　　(단위 : 천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가부채	6,828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생산성 부채	5,256	6,191	7,331	9,136	9,781	12,598	14,054	15,159	15,282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국 제

※ UR협상이후 농산물시장 개방화 결과 미국 등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1) WTO 협정은 겉으로는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무역자유화와 국제 교역증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 미국, 호주 등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되고 있음.

<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액 및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4-'97 증가율
미국	수출액	48,249	47,795	52,332	62,259	66,256	62,544	19.5%
	무역흑자	19,780	18,996	21,431	28,420	28,363	21,477	0.2%
캐나다	수출액	10,926	10,351	11,239	12,789	14,703	15,191	35.1%
	무역흑자	3,340	2,367	2,632	3,709	5,180	4,676	77.7%
호주	수출액	11,064	11,108	11,955	12,709	16,086	16,946	41.7%
	무역흑자	9,230	9,238	9,926	10,119	13,296	14,112	42.2%
뉴질랜드	수출액	5,093	4,945	5,374	6,136	6,603	7,034	30.9%
	무역흑자	4,440	4,230	4,544	5,131	5,416	5,851	28.8%
프랑스	수출액	36,282	33,331	34,947	40,722	40,402	38,501	10.1%
	무역흑자	11,361	11,242	9,700	11,933	12,783	12,598	29.9%

*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수입액 및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94-'97 증가율
한국	수입액	6,966	6,633	7,791	9,606	10,755	9,709	24.6%
	무역적자	-5,788	-5,528	-6,460	-7,955	-8,994	-7,899	22.3%
일본	수입액	31,311	31,720	37,704	41,181	41,790	38,204	1.3%
	무역적자	-29,863	-30,194	-36,067	-39,431	-40,207	-36,566	1.4%
노르웨이	수입액	1,561	1,473	1,700	1,897	2,011	1,946	14.5%
	무역적자	-1,153	-1,088	-1,283	-1,412	-1,487	-1,411	10.0%
스위스	수입액	4,758	4,406	4,987	5,463	5,462	4,999	0.2%
	무역적자	-2,655	-2,386	-2,662	-2,835	-2,951	-2,732	2.6%
중국	수입액	9,800	8,569	12,419	18,272	17,519	15,972	28.6%
	무역수지	2,244	3,628	2,160	-3,908	-3,176	-2,558	18.4%

*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2) 국제 곡물시장은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량종속에 대한 농산물 수입국 및 개도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 > (상위 3국, 1997년)

구분	국별 점유율 (물량기준)	합계
콩	미국 67%,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2%	90%
옥수수	미국 57%, 아르헨티나 15%, 프랑스 10%	82%
밀	미국 24%, 캐나다 18%, 프랑스 14%	56%
쌀	태국 27%, 베트남 17%, 미국 11%	55%

*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3) 또한 UR협정 이후 곡물가격의 변동 폭이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은 식량 수입국의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수급예측을 어렵게 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 특히 지난 2월 미국의 농업무역정책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주요 곡물인 옥수수, 밀, 콩, 목화, 쌀을 생산비보다 40%이상 싼 가격으로 전세계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전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연구소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개도국의 농민들이 자국 농업에서 밀려나고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4) 특히 미국 등은 WTO 협정에 상관없이 변칙적인 술수와 억지 주장으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결국 WTO에서 주장하듯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농산물 수입국, 약소국, 개도국들의 농업 파괴로 결말이 나고 있음.

① 다른나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해 온 미국이 2002년 신농업법을 개정해 소득안정망, 환경농업정책, 농촌개발 등을 확충하고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농업보호를 강화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세계적 비난을 사고 있음.
특히 2002년~2007년까지 농업예산을 77%나 증액하고 농산물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정해두고 시장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농가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
불하는 가격보전 직접지불제도 등 직불제를 강화했음.

② 2001년 WTO 가입당시 농가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정부는 농가 현금보조금 지급안을 승인함. 계획에 따르면 중국 농민들은 판매하는 곡물 1당 0.16위안의 현금 보조를 받게 됨.

③ 대부분 전세계 국가들은 WTO와 상관없이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 철학으로 다원적 기능, 식량안전 보장 확보 등을 주요 농정 과제로 설정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음.

3. WTO DDA(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과 전개

1)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 배경 및 과정

① UR 협상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강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약소국의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시켜 놓고도 아직도 무역장벽이 많이 남아있다며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임.

② WTO DDA 협상은 지난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2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3차 각료회의에서 DDA를 출범시키려 하였지만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의견 충돌과 세계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대 투쟁으로 출범에 실패하였음.

③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폐막 예정일인 13일을 하루 넘긴 14일, 새 협상의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DDA 협상이 시작됨.
- 협상에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도국의 이익반영을 협상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다자간협상을 의미하는 '라운드'가 제3세계 및 개도국에서 정서적 반발을 일으킨다는 것을 고려해 명칭을 개발아젠다(Development Agenda)로 수정함. 협상 초기에는 WTO 뉴라운드(New Round)라고 불림.

< 국제 무역체제 변화 과정(참가국 수) >

1948년	가트(GATT,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족 (23개국)
61년~62년	딜론라운드(23개국) : 4,400개 품목 관세 상한 설정
64년~67년	케네디라운드(56개국) : 평균 관세율 35%로 인하
73년~79년	도쿄라운드(99개국) : 평균 관세율 6%로 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선언
86년~94년	우루과이라운드(123개국) : 농산물·섬유류 무역의 가트 편입.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합의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 잠정협정인 가트(GATT)가 영구조직으로 변하고 관할 범위도 공산품에서 농산물 ·서비스·투자 등 새 분야로 확대
2001년 11월	뉴라운드 출범(144개국)

2)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출범 선언문 중 농축산물 협상 관련 주요 내용

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②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③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④ NTC(비교역적 관심사항: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NTC : 비교역적 관심대상.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지닌 고유한 역할로서 이에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 등이 포함됨. NTCs는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회원국을 의미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이 주도

⑤ 협상방식 수립 시한은 2003년 3월 31일,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함.(단, 협상종결은 전체 DDA 협상 종결과 합치)

⑥ 결국 WTO 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이미 도출된 원칙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동시에 농업보조의 감축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3) WTO DDA 농업협상 향후 일정

① 농업보조 및 관세감축 등에 관한 세부협상 원칙을 정하는 모델리티 협상을 2003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제 5차 각료회의(2003년 9월 14일, 멕시코 칸쿤)때까지 국별 보조 및 관세감축 이행계획서(C/S, Country Schedule)를 제출함. 2004년 품목별, 정책별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해 최종 협상 타결 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② 현재 세부원칙에 대한 유럽연합 등 수입국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별 입장차이가 심해 3월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DDA 농업협정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협상기간은 3년으로 잡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4년을 목표로 했다가 7년 이상 걸린 점을 감안하며 협상이 반드시 2004년 말에 끝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향후 일정 >

향후 협상일정	
○ '03. 2.14~16	: WTO 소규모 각료회의(동경)
○ 2.24~28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초안논의)
○ 3월 중	: Modality 2차 초안 배포
○ 3.25~31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Modality확정)
○ 9.10~14	: 제5차 WTO 각료회의(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 '03. 9~'04.12	: 품목별, 정책별 양허협상
○ '04. 12. 31	: 다른 분야와 함께 최종 협상 타결

4.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동향과 문제점

1) 그동안 미국,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 및 수출국들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 대(對)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한국 NTCs와 수입국들의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대립하여 왔음.

① 주요 쟁점으로는 협상 양대축중 하나인 미국은 협상초기부터 모든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관세상한선을 정하고, 보조금도 5년 동안 96~98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낮추자는 충격적 방안을 제시하며 농산물 수입국들을 압박하였음.

② 반면에 한국, 일본, EU 등 수입국들은 94년 타결된 UR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각 국의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산물 관세 감축 및 농업보조금 감축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안으로 대립되어 옴.

< 국가별 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 >

논의 쟁점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 NTCs그룹의 농산물 수입국
시장접근	관세감축	○ 고율관세로 인해 UR 농업협상의 결과가 퇴색되었으며, 국가간 관세 격차 심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면 Swiss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되 특히 고율관세는 상한을 설정하여 제하자는 주장 ○ 특히 미국은 관세상한을 25%로 설정 관세감축을 하자는 주장	○ 수출국과 입장 동일	○ 고율관세는 UR 농업협상의 결과며, 고율관세의 급격한 감축은 양한 농업의 공존과 NTC를 저하므로 UR방식에 의한 감축하고 제안
	시장접근 물량의 증량 및 관리 (TRQ)	○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대 증량하자는 주장 ○ 특히 미국은 최종양허수준에서 20% 량 주장	○ 수출국과 입장 동일	○ 최종 양허수준 대비 각국이 수 가능한 범위내에서 증량 ○ 품목특성이나 수입국 시장여건에 라 관리방법의 다양성 인정
	특별 긴급관세 (SSG)	○ 철폐 또는 개도국에게만 인정	○ 수출국과 입장 동일	○ 현행 대로 유지
국내보조	허용 대상보조 (Green Box)	○허용보조의 적용요건과 규율을 강화하 기존 허용보조에 대해서 상한을 설정 고 일부 허용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분류하여 감축 이행하자고 주장	○ 수출국과 입장 동일	○ 현행 허용보조의 기본 틀 유지
	생산 통제허 직접보조 (Blue Box)	○ 철폐 및 감축보조로 분류		○ 현행 대로 유지
	감축 대상보조 (Amber Box)	○ 품목별(product specific) 감축 및 이 첫째 년도에 50% 감축, 나머지는 5 (개도국은 9년)간 균등감축 ○ 단, 미국은 현행 총액기준 감축방식 유지하고 1996~98 농업총생산액 5%수준이 되도록 5년간 균등감축 주	○ 현행 총액기준 감 방식 주장 ○ 단, 중국은 3년안 철폐 주장	○ 현행대로 유지
	감축면제 최소보조 (De-Minimis)	○ 현행 수준 인하 및 단계적 감축 ○ 단, 미국은 현행수준 유지 주장	○ 선진국의 De-minimis 철폐 또는 수준 인하 주장	○ 현행 수준(농업생산액의 선진 5%, 개도국 10%) 유지
수출경쟁	수출보조	○ 가장 무역왜곡적 보조로 철폐	○ 수출국과 입장 동일	○ URI방식에 의한 추가 감축 ○우리나라는기준기간(1986-90) 동 수출보조 지원실적 도 없고 관 외 사항임.
	수출신용	○ 수출보조와 동일하게 철폐 또는 감축 전제로 한 규범 제정 ○ 미국은 수출신용 최대 사용국으로 식 안보 등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 수출보조와 차이를 주장.	-	-

2)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Modality)에 관한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① 지난 2월 18일 WTO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 하빈슨은 각 회원국의 논의 쟁점을 나열식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배포하였음.

② 종합보고서에 이어 하빈슨 의장은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쟁점별로 안을 제시해 2월 12일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에 관한 제 1차 초안을 배포해 극심한 논란이 되고 있음

③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 주요내용

○ 관세감축 : 선진국은 관세가 90%를 초과하는 고율관세 품목은 5년간 평균 60%, 최소 45%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20%를 초과하는 품목은 10년간 평균 40%, 최소 30%를 감축. 다만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은 전략품목(SP, Strategic Products)으로 지정, 10년간 평균 10%, 최소 5%만 감축하도록 함.

○ 감축대상보조(Amber Box) : 총액기준(Total AMS)으로 감축하되 선진국의 경우 5년간 60%를, 개도국은 10년간 40%를 감축.

○ 시장접근 물량(TRQ, 관세할당) : 선진국의 경우 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 미만 품목은 5년간 10%까지 증가. 반면 개도국은 평균소비량의 6.6% 미만 품목은 10년간 6.6%까지 증가. 단, 개도국의 전략품목은 증량대상에서 제외.

<세부원칙에 관한 의장 1차 초안 주요 내용>

< 관세감축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관세율	감축률		이행기간
		평균	최소			평균	최소	
초안 요지	90%초과	60%	45%		120%초과	40%	30%	
	15~90%	50%	35%	5년	20~120%	33%	23%	10년
	15%이하	40%	25%		20%이하	27%	17%	
					전략품목(SP) [ ]개	10%	5%	
UR협상결과		36%	15%	6년		24%	10%	10년

* SP(전략품목, Strategic Products)은 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지정해서 무역과정에 예외보호조항을 둘 수 있도록 1차 초안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

< 감축보조(Amber Box)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초안요지	60%	5년	40%	10년
UR협상결과	20%	6년	13.3%	10년

* 총액기준 감축 단, 품목별 AMS는 1999년~2000년 평균지급액 초과 불과

* 통보시 다른나라 통화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 가능

* Amber Box (감축대상보조) :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총칭하는 것으로 WTO 농업협정 이행기간 내에 일정목표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예) 한국의 추곡수매제

< 의무수입물량 (TRQ)>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요지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미만 품목은 10%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8%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12%까지 증가	5년간 이행	1999~2001년 평균소비량의 6.6%미만 품목은 6.6%까지 증가 - 해당품목의 1/4은 5%까지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8%까지 증가 * SP품목은 증량대상에서 제외	10년간 이행
UR협상 결과	기준년도('86~'88년)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인 품목은 3%에서 5%로 확대(MMA), 3% 이상인 품목은 최소한 기준년도 수입량 보장(CMA)	6년간 이행	선진국과 동일	10년간 이행

* TRQ(의무수입, 관세할당제도) : 특정품에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제도임.

< 특별긴급관세(SSG)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요지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이행 종료 직후 또는 2년후 철폐	기존 SSG 유지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 (SP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SSG 마련
UR협상 결과	UR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에 대해 허용	선진국과 동일

* SSG(특별긴급관세) : 개방에 의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WTO 양허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도록 한 피해구제제도임. 대상품목은 UR협정 당시 관세화로 개방한 농산물 중 각 국의 C/S에 명기한 품목으로 국한되며 발동요건 충족시 산업피해 조사없이 자동발동되는 것이 특징임. 우리나라는 118개 품목이 대상품목임.

< 허용보조(Green Box)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요지	기본틀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조금 지급요건을 명확화 - (사례) 탈농지원 대상에 농지 장기 임대도 포함	보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 개정 및 새로운 허용보조 추가 검 - 공공비축제 등은 적용요건 완화 - 새로운 허용보조정책 추가 · 식량안보 목적 핵심작물의 국내 산 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 농촌 활력과 문화유산 유지를 위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UR협상 결과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허용보조 입	선진국과 동일

* Green Box(허용대상 농업보조): 농업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 생산 및 가격을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등.

<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요지	'99~'01년간 평균 지급액을 5년간 50%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99~'01년간 평균 지급액을 10년간 33% 감축하거나 AMS에 포함시켜 감축
UR협상 결과	감축의무 면제	선진국과 동일

* Blue Box(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키므로서 반영되는 직접지불. 단,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 예) 한국의 생산조정제 등

<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요지	현행 5%를 5년간 매년 0.5%씩 인하	현행 10% 유지
UR협상 결과	5%	10%

* De Minimis(의무면제, 최소허용보조) :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협정과 관련된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 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 마진이나 덤핑 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농산물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이하(개도국은 10%)정도로 미미할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③ 주요국의 반응

o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

-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들은 기대수준 보다는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적절하고 균형있는 초안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임.
- 특히 케언즈 그룹의 뉴질래드는 개혁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표정관리 차원에

서 나온 행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음.

- 캐나다는 케언즈그룹의 일원이면서도 낙농품, 닭고기 등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언즈그룹 국가와는 달리 큰 폭의 관세감축은 곤란하다는 입장.

○ EU, 일본, 한국 등 NTCs 그룹 국가는 초안은 수출국 입장에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함.

- EU는 NTC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동물복지, 평화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초안의 변화없이는 EU로서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 결국 EU의 반발 때문에 지난 2월 동경에서 열린 비공식각료회의에서는 1차 초안을 협상의 출발이 아닌 촉매제로 활용하자고 합의할 수 밖에 없었음.
- 일본은 관세삭감에 있어 UR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각 국간 부담이 불평등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삭감의 수치가 아주 크고 수출국 주장에 편향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많은 중요한 점에서 수정 필요하다는 입장
- 노르웨이는 초안의 급격한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은 노르웨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되며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

④ WTO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의 문제점

○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수입국들에게 매우 불리함.

- 특히 개도국에게 큰 특혜를 주어 이후 협상의 구도를 수출국대 수입국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수출국들이 주장하던 스위스방식이 아닌 우리가 주장한 UR방식을 적용하였지만 관세인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수출국들의 의도만 관철된 것임.

○ 특히 우리가 주장해온 NTC가 개도국에게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농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초안은 NTC를 반영하지 않은 것과 같음. 단, 전략품목의 도입 및 개도국 특혜 및 우대조치 강화는 이후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임을 보여줌.

○ 결국 1차 초안대로 협정이 마무리 된다면 한국 농업은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을 맞게 될 것임.

<WTO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근거한 한국 농산물 최소 관세 변화 >

품목	2004년 양허관세	최소감축률 45% 적용시 (선진국 적용)	최소감축률 30% 적용시 (개도국 적용)
보리	300	165	210
대두	487	268	341
옥수수	328	180	230
감자	304	167	213
고구마	385	212	270
참깨	630	347	441
고추	270	149	189
마늘	360	198	252
양파	135	74.3	94.5
감귤	144	79.2	101
유제품	176	96.8	123
인삼	223	123	156
밤	219	142	153

*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경우와 유지하지 못할 경우 2010년 농업총소득은 약 2조 9천억원 차이를 보임. 특히 쌀 소득에서의 차이(2조 7천억원)가 농업총소득 차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 시나리오별 쌀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수입량, 소득과 농업총소득 변화 >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농가판매 가격지수 (명목)	수입량2) (천톤)	쌀소득3) (10억원)	농업 총소득 (10억원)
2002		1,053	4,927	130.5	154	6,958	14,950
2005		983	4,896	126.4	205	6,741	15,720
2010	개도국	818	4,225	123.8	373	5,558	15,412
	선진국	722	3,596	82.3	834	2,844	12,491
	차이1)	96	480	41.4	462	2,714	2,924
2005년 대비 증감률 (%)	개도국	△16.8	△16.8	△2.1	7.3	△17.5	△2.0
	선진국	△26.6	△26.6	△34.9	16.3	△57.8	△20.5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1) 차이는 개도국의 경우에서 선진국의 경우의 해당 수치를 뺀 값임.

2) 쌀 수입량에서 2005년 대비 증감률은 수입량을 기준년도(1986-88) MMA기준 비율을 의미. 따라서 7.3%는 개도국 우대를 유지할 경우 2010년 예상 쌀 수입량 83만 4천톤이 MMA 기준으로 16.3%에 해당함을 의미.

3) 쌀소득과 농업총소득은 모두 명목개념임.

< 시나리오별 고추, 마늘, 양파, 참깨의 소득 >

			재배면적 (천ha)	생산량 (천톤)	농판가격지수(명목)	농업소득 (10억원)
고추	2002		70.8	188.9	134.7	208.4
	2005		69.2	193.9	156.6	254.4
	2010	개도국	67.8	191.3	137.3	209.6
		선진국	68.7	218.2	103.6	163.9
		차 이	△0.9	△ 26.9	33.8	45.7
마늘	2002		33.2	393.8	50.9	47.1
	2005		30.0	384.8	53.1	48.8
	2010	개도국	28.6	379.0	54.7	49.0
		선진국	28.4	363.1	49.9	32.2
		차 이	0.2	15.9	4.8	16.7
양파	2002		15.3	930.0	142.9	25.9
	2005		14.4	907.9	199.2	40.0
	2010	개도국	13.3	860.5	184.7	58.8
		선진국	13.9	913.0	139.6	43.9
		차 이	△0.6	△52.5	45.1	14.9
참깨	2002		4.4	31.6	103.0	294.0
	2005		44.7	31.9	101.0	297.3
	2010	개도국	38.8	28.6	76.3	205.6
		선진국	37.9	27.9	63.0	170.3
		차 이	0.9	0.7	13.3	35.3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o 결국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한국과 같은 수입국과 약소국의 농업시장을 마음껏 약탈 할 수 있도록 한 강도적 제안임. 특히 한국의 경우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농업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1) UR협상을 실패한 유일한 나라라는 비웃음을 사온 한국 정부가 또다시 세계화 개방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에 뛰어들어 DDA 출범에 공조하였음.

① UR협상시에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고 저자세 외교를 펼치면서 협상동향의 철저한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밀실 협상을 가져가고 정부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음.

② 그 당시에도 성급하게 한국 제안서를 내놓아 UR협상을 결국 실패했으면서 다시 오류를 범하고 있음.

2) 또한 개도국 지위 확보가 최대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과의 공조 등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WTO에 농업협상에 관한 한국 개방 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음.

① 그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6년간에 걸쳐 관세감축을 이행하되 품목별로는 최소한 15%를 줄이고 농업 국내보조금 역시 총액기준으로 6년에 걸쳐 55%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함.

식량안보 관점에서 핵심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최소 관세 감축을 15% 대신 10%로,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보조금 감축률도 55% 대신 20%로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에서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하는 우대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② 현재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 및 유럽연합(EU)만이 개방제안서를 제출했을 뿐인데 한국은 제안서를 제출한 유일한 개도국이 되었으며 성급하게 구체적인 개방 수치까지 포함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수출국들에게 개방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 농업이 적용되는 개도국 안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되는데도 선진국안까지 제출해 개방을 노리는 선진국들에게 여지를 제공하였음.
- 성급하게 제안한 것에 대한 농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농림부는 9월에 국별 이행계획서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입장을 미리 제안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데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농민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폭탄선언식의 제안서 발표로 비난을 사고 있음.

③ 특히 이 개방안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된다해도 2004년 양허세율 기준 62.2%인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11년에는 39.8%로 내려가고 농업보조금도 2011년에는 1조1천920억원~1조2천918억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개방제안서대로 나간다면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참깨, 보리, 마늘, 옥수수, 감자, 고추 등 100여개 주요 품목의 경우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은커녕 급격한 수입으로 몰락이 예상되며 농업 보조금을 대폭 감축에 따라 쌀 추곡수매제도 등의 폐지도 예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④ 이번 DDA 협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제안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만큼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을 한 것 등을 볼때 통상당국이 농업 협상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⑤ 즉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시장개방을 제촉하는 안을 내놓은 꼴이기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

< 한국 개방 제안서 주요 내용 >

구 분			감축률 및 이행기간
관세감축	선진국	○ 평균감축률	36%
		○ 품목별 최소감축률 - 주요 핵심농산물	15% 10%
		○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6년간 균등감축
	개도국	○ 평균감축률	24%
		○ 품목별 최소감축률 - 주요 핵심농산물	10% 6.7%
		○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10년간 균등감축
국내보조감축	선진국	○ 감축목표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20% 나머지 품목 : 55% (총액기준)
		○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6년간 균등감축
	개도국	○ 감축목표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13.3% 나머지 품목 : 36.7% (총액기준)
		○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10년간 균등감축

* 주요 핵심농산물은 농업총생산액 또는 국내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식량안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수출보조가 없으며 수출비중이 낮은 농산물

3) 특히 사대주의에 물든 일부 학자, 교수와 외통부를 비롯한 농림부 일각에서 까지 앞장서서 개도국지위 확보가 어렵다느니, 쌀 개방이 대세라는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음

4) 무엇보다 개방화의 선두주자인 외교통상부가 주도하고 농림부가 구경꾼이 되어 진행되는 협상에는 농민들의 요구나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리 없음.

6. 향후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과제

1) 당면해서는 한국 농업의 생사가 달린 개도국 지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① DDA 농업협상에서는 UR협상 때와는 달리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WTO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초안에도 개도국 특혜와 우대 조치가 강조되고 있어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특히 2003년 9월부터 본격화 될 개도국 유지 협상을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② 특히 UR협상 당시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 농가소득, 경영규모 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음. 따라서 UR협상 후 더욱 악화되던 한국 농업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로 더욱 어려워 진 현실을 강조하여야 함.

- 한국 농업은 전체 식량자급률이 31%정도로 열악하고 60세 이상 농민들의 전체의 60%가 넘어 고령화되고 있으며 UR협상 이후 농가부채 급증과 소득 감소 등을 개도국 지위 유지의 근거로 활용해 나가야 함.
- 1995년 OECD 가입시 한국의 농업은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으며 멕시코, 터키 등은 한국보다 OECD에 먼저 가입했지만 1994년 UR 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선례가 있음.

③ 그런데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농림부 일부 관료들, 대외경제연구원 등 관변 연구소들이 앞장서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다,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는 등 돌출 발언을 터뜨리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개도국 지위 유지에 사활을 걸고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일 여의치 않다면 WTO 농업협상 자체를 거부하여야 함.

2)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개방 유예 관철

① 쌀은 유일한 식량자급 곡물로서 국민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의 31.4%를 공급하는 주식이며, 2001년 기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33%(2000년), 전체 농지면적의 57.7%, 전체 농가의 77.8%, 호당 농업소득의 53.7%%(농가소득의 25.3%)를 차지하는 한국농업의 생명줄임.

② 전체 농가의 77.9%가 쌀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은 소득 하락은 물론 농산물과 농업 전반에 대한 치명적인 연쇄 붕괴를 야기할 것이 뻔함.

③ 또한 2004년 쌀 재협상은 2005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WTO DDA 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DDA 협상에서 주곡인 쌀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의 문제를 강조하고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여야 함.

특히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식량 보급의 문제까지 협상에 반영해야 함.

3) 자주적 농업 통상 및 대응

① 농업분야의 개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적절한 대책 마련하여야 함.

o NTC(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화

o 관세 감축의 폭 축소

o MMA(시장접근물량)의 점진적 증량

o SSG(특별세이프가드) 유지

- 관세 감축이 UR 협상 때보다 큰 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율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특별세이프가드는 쌀 소득에 약 1조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o AMS(보조총액측정치)의 점진적 감축

o De-Minimum(최소허용보조)의 유지

- 최소허용보조가 철폐될 경우 그동안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모두 AMS에 삽입되어 결국 보조금 감축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임.

o 특히 WTO DDA 협상에서 민족내부간 거래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주요 식량에 대해 순수입국의 요청시 수출국의 의무수출 규정을 신설해야 함.

o 또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식량수입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중단하여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수출의무조항 등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함.

② 외교통상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업통상협상권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가칭)'농업통상위원회'를 신설하여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협상을 가져가야 함.

4)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 수립과 전면적인 농정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① DDA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 선진국간 갈등과 마찰, 농산물 수입국·개도국의 반발 그리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비정부기구)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등 국제적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방화·자유화를 내세우며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 소극적인 협상 태도로 우리 농업을 위기로 몰아놓고 있음.

또한 정부관련 연구원, 학계가 앞장서서 맹목적인 자유무역론과 비교우위론, 농업포기론을 유포하고 있음.

② 농업은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하고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 함. 따라서 통일대비, 식량자급, 농가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큰 틀로 근본적인 농정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o 가시화 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토양, 기후, 작목 등의 고유한 특성과 내용을 잘 살리고 적정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남북한 농업의 유기적 관계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o 주곡인 쌀의 완전 자급 및 기초 농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며, 농업이 균형적 국민경제구조 구축의 토대와 민족의 식량공급 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과 같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 목표 및 자급계획을 명시하고 이행해 나가야 함.

o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농민복지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만으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생산기반의 보전과 강화를 기반으로 가격의 지지,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등 시급 함.

o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지력의 약탈을 최소화하고 농토유실을 방지하며 농업생산의 자연적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규모화하는 약탈농법의 추진 중단 및 가족농 중심의 영농체계와 농업기술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토양개량과 건강한 작물생산 등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의 발굴과 개선, 보급이 있어야 함.

③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들을 수립해야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당연한 지불인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불가피한 통상으로 발생할 농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통상이익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피해를 구제할 통상기금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검역청 신설·검역 시설 및 인원 확충으로 수입 농축산물 및 동식물 검역을 철저히 진행하고 또한 오염물질, 잔류농약과 병해충 및 질병 발견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의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함.

5) 결국 UR협정에 이어 WTO DD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우리 농업은 시장개방이 전면적으로 가속화되어 파탄날 수 밖에 없는 민족농업 최대의 위기상황임.

WTO DDA 협상의 이러한 구도가 파탄나지 않고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음.

6) 무엇보다 수입국의 농업파괴 및 강도적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WTO를 본질을 폭로하고 전세계의 WTO 반대와 해체를 주장하는 농민, 노동자, 소비자, 환경단체 등 비정부조직들과 연대하여 대응해야 함. 나아가서는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WTO, World Bank, IMF 같은 다자간 기구를 재편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함.

II.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응

1. FTA(자유무역협정)이란

1)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와 나라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협정

2)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되는 것은 다자간협상(WTO)이 점점 선진제국주의 간의 갈등과 경쟁,개도국들을 도전,시민,사회단체(NGO)의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이행당사자간의 쌍무협정을 확대하고 있음.

2.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가?

1) 칠레는 세계적인 유통망을 지닌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한 6대 수출상이 전체 수출 물량의 70%이상을 취급하고 있음.

2) 칠레 농업은 세계 다국적 기업의 첨단 시설로 무장한 대규모농업을 하고 있음.

<칠레와 우리나라 과수 농가 재배 규모 비교>

	한국	칠레	칠레농가규모
과수농가 평균 재배규모	0.5ha	6.6ha(13배)	20ha이상의 농가-〉 과수면적 전체의 68% 100ha대규모농가-〉 과수면적의 전체의 22%

3) 칠레는 세계1,2위를 달리는 과수 수출 국가임.

4) 가장 큰 이유는 이후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반대를 미리 격기위한 미국의 야욕이 배경에 있다는 것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진행 될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 한·미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칠레 협상 내용보다 더 급진적인 안으로 개방화가 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는 과수, 축산, 신선채소, 쌀의 개방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초토화 시킬 것임.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① 제외	쌀, 사과(신선), 배(신선)
② 계절관세	포도(신선) ※ 11월~4월 기간중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관세유지 ※ 계절관세는 1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철폐
③ DDA협상 이후논의	○ 채소·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 ○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팥, 녹두, 고구마(냉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꿀, 밀크, 크림, 녹용 등 ○ 과실류 : 감귤, 대추, 잣,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고 등 ○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잣, 대두유, 유채유, 참기름, 참깨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제공 + DDA협상이후 논의	○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 우선 소량의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 협상 종료 이후에 다시 논의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 차조제품 등
⑥ 10년내 철폐	○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위, 포도즙, 단감, 살구,메론, 과일쥬스(오렌지·사과·복숭아), 채소쥬스 등
⑦ 9년 관세철폐	○ 기타 과실쥬스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⑧ 7년내 관세철폐	ㅇ 과실류 :복숭아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ㅇ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ㅇ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ㅇ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ㅇ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⑨ 5년내 관세철폐	ㅇ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ㅇ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ㅇ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ㅇ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⑩ 즉시 관세철폐	ㅇ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ㅇ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씨, 종자, 당 등 ㅇ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4.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망

1) 지난 2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칠레 라보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졌음.

2)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 뿐임.
몇 년동안 이어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투쟁은 국회비준 투쟁만이 남았음.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만약 국회비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2004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하여야 함.

3) 또한 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유무역 특별법은 포장만 요란한 것으로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는 안임.
즉, 짓고 싶은 농민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판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수입해서 밑지는 것을 규모화해서 봉창 한다는 것이 특별법 내용임.

양 허 유 형	대 상 품 목
⑧ 7년내 관세철폐	ㅇ 과실류 :복숭아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ㅇ 축산물 : 칠면조고기(TRQ 600톤제공) ㅇ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콩(냉동), 감자 등 ㅇ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ㅇ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⑨ 5년내 관세철폐	ㅇ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ㅇ 화훼류 : 튜울립·백합·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난초·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ㅇ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ㅇ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넛트류,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⑩ 즉시 관세철폐	ㅇ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ㅇ 곡 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씨, 종자, 당 등 ㅇ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나무껍질, 식물성유지(팜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4.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망

1) 지난 2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칠레 라보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졌음.

2)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 뿐임.
몇 년동안 이어진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투쟁은 국회비준 투쟁만이 남았음.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만약 국회비준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2004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하여야 함.

3) 또한 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유무역 특별법은 포장만 요란한 것으로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는 안임.
즉, 짓고 싶은 농민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판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수입해서 밀지는 것을 규모화해서 봉창 한다는 것이 특별법 내용임.

< 한칠레 FTA 이행 특별법 주요 내용 >

□ 경영이양 등 지원

- 조기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 지원

- 작목전환에 따라 영농자금 지원 등

□ 폐업지원

-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 생산설비 투자가 많은 품목의 재배, 사육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피해산업 긴급구제

-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 농업경쟁력 강화

- 영농규모 확대, 경영·기술능력 향상, 고품질·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및 연구·개발지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폐업, 구조조정 등에 지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5인이내)

- 지원기본방침, 협정이행 상황점검, 폐업지원 세부기준 등 심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농업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산업이다>

2003.0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농업, 농촌이 붕괴됨.

o 정부는 협정 체결에 있어 쌀, 사과, 배는 제외하였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포도 출하시기가 다르므로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함.

o 그러나 한 품목의 대량수입은 도미노현상처럼 연쇄적 가격폭락으로 이어짐.

- 98년 12월 미국산 오렌지의 대량 수입으로 주요 과채류의 가격이 절반가격으로 폭락

o 16년내 관세가 철폐되는 15개 품목, 10년 동안 철폐되는 210여 개 품목, 7년 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0여 개 품목, 5년 동안 관세가 철폐되는 560여 개 품목,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50여 품목 등 총 1080여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면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음.

2) 공산품의 수출은 미미하고 농업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를 입어 국가경제에도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옴.

o 정부는 농업을 희생시키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득이라고

o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칠레 외무부 마투스 양자간 경제국장은 "자동차나 휴대전화 등 한국제품의 수입관세는 6%7로 떨어지는 것만으로 이러한 제품이 칠레 국내시장에서 과잉되지 않는다. 반면에 농산물을 으로 한 칠레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100%에 달하며, 향후 관세철폐에 의한 수출증대효 크다"고 주장함.(월간 세계농업뉴스, 제 28호, 2002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칠레의 경제규5 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겼고 이로 인해 미국 등 WTO 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o 농업은 공산품과 달리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 는 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하거나 농업부문을 제외함.

(예: 일본과 유럽연합은 칠레와의 협정에서 대다수 농업품목을 예외로 함. 또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에서 58품목을 예외로 두었으며 호주와의 협정을 앞두고 농산품 예외규정을 논의 중임.)

o 한국은 쌀, 사과, 배를 제외하고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이후 모든 협상에서 다른 국가에도 동일 수준의 개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됨.

o 이는 이후 WTO DDA농업협상에서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은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WTO협상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됨.

o 현재 국회비준 일정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WTO DDA협상은 2004년까지 예정되어 있음.(시 예측할 수 없음)

o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이 4월에 결말지어진다면 이미 주요품목의 7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등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

o 관세철폐에 동의해 준 정부가 WTO관세감축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WTO농업협상에서 협상 발휘할 수 없음. 이는 쌀재협상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5)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함.
또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 막아야 함.

o 그동안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특히 연구기관, 학자, 정치인까지도 협정 대상국의 선정에 대한 비판, 협상결과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인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국가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들며 잘못된 협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임.

o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미국의 이라크전쟁 중 터키 군사기지사용에 대한 미-터키 정부간 약속에 대해 터키 국회는 거부 함.

6) 정부는 FTA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이 법은 여론무마용 반농민적이고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o 지난 UR협상과 WTO가입 국회비준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된 [WTO이행특별법] 처럼 FTA특별법 제정으로 여론과 불신을 무마하려 함.

o 특히 특별법이 FTA체결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차원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협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비준을 최소한 2년 이후로 연기하고 재논의해야 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 협상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회비준은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WTO협상 우리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됨.

o 현재 국회비준 일정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WTO DDA협상은 2004년까지 예정되어 있음.(시 예측할 수 없음)

o 협정체결에 대한 비준이 4월에 결말지어진다면 이미 주요품목의 7년내 관세철폐를 약속한 한국이 주장하는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보조금감축 최소화 등은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상황

o 관세철폐에 동의해 준 정부가 WTO관세감축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WTO농업협상에서 협상 발휘할 수 없음. 이는 쌀재협상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5)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함.
또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 막아야 함.

o 그동안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특히 연구기관, 학자, 정치인까지도 협정 대상국의 선정에 대한 비판, 협상결과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인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인은 '국가 신뢰도 추락' 등을 이유로 들며 잘못된 협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임.

o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미국의 이라크전쟁 중 터키 군사기지사용에 대한 미-터키 정부간 약속에 대해 터키 국회는 거부 함.

6) 정부는 FTA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이 법은 여론무마용 반농민적이고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o 지난 UR협상과 WTO가입 국회비준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된 [WTO이행특별법] 처럼 FTA특별법 제정으로 여론과 불신을 무마하려 함.

o 특히 특별법이 FTA체결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차원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에 목적을 두고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협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비준을 최소한 2년 이후로 연기하고 재논의해야 함.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 공식협상 추진(99.12~2002.10, 6차례)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 협상타결(2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종우, 종돈,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7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①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②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③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 제공 + DDA 협상후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⑤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⑥ 10년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협정발효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⑦ 9년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발효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⑧ 7년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발효후 7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⑨ 5년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발효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⑩ **즉시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 **세이프가드 분야**

-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인정.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WTO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 발동요건	• 심각한 피해 등 (시장 점유률 등 구체적 기준 필요	•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등 (일반원칙만 있음)
• 대상품목	• 모든 품목	• 농산물
• 적용기간	• 최대 4년(4년 연장가)	• 제한 없음
• 잠정조치	•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 긴급사유 존재시 120일간

-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임.

○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마련
- 육류,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육류는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 **동식물 검역(SPS)분야**

- WTO/SPS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3) 공산품 분야

〈칠레측 공산품 양허안 개요〉

카테고리	적용대상 품목의 예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7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10년철폐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13년철폐	섬유 · 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냉장고, 세탁기 등

○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섬유·의류 등에 대해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5년 거치후 13년철폐(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협정 발효시 한국은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7년내 98.7%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한 또는 철폐함. 반면 칠레는 한국 수출품목 전체의 66.7%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함.

3.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영향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됨.

○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 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

○ 포도 - 하우스 포도만 연간 300억원 피해 예상
○ 기타과실 - 연간 5,355억원 피해 예상
○ 축산물 - 연간 1조3,500억원 피해 예상
※ 산술적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농업, 농관련산업 등의 피해 막대

2)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옴.

○ **농업은 특정 계급, 계층을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9.6억 달러, 농업을 완전 제외하는 경우 9.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부문을 완전 제외해도 후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0백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칠레 FTA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국의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는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의 연구논문에서도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함.

-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음.

-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 칠레는 단일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며 2010년에 가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 등 이미 많은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FTA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 한국은 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하고 칠레는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함.

3) WTO SPS(sanitary and phyto measure, 위생 및 검역조치)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미국,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입제한'남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973년 가트 도쿄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검역과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수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독자적인 1차 검역권을 없앤 것 외에도 유전자조작이나 성장호르몬 농축산물 등의 수출입에 대해서 속수무책임.

○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칠레산 농축산물이 장기간의 운송 끝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WTO회원국의 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농산물을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대우를 주장할 것이며 WTO회원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임.

5) WTO협상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방이 확대 가속화 될 것임.

○ 현재 WTO농업협상이 진행중이고,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볼 때 각국, 그룹간 시각차가 너무 커 협상 완결시기, 협상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04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년간 10%~20% 관세 감축을 약속한 1080여 개 품목들은 국회비준이 끝나면 30일 후에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국회비준이 된다면 WTO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협정을 이행해야 하고 개방은 확대됨.

6)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

○ 유럽연합(EU)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음. 유럽연합은 농업강국임에도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는데 우리는 108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하기로 약속함.

※ EU의 협상조건
-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 520개 품목을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으로 설정
-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TRQ(관세할당제도) 제공이나 관세감축 등 시장 개방 일정을 DDA 협상 이후로 미룬 상태.
- 그밖에 TRQ는 제공하지만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223개에 달함.
-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

○ 미국은 호주와의 FTA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예외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임. 미국은 특히 NAFTA에서 캐나다와의 협정 품목중에 민감품목인 유제품, 땅콩, 설탕, 목화 등

58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한 바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쌀 재협상에서 악영향을 줄 것임.

○ 앞서 밝혔듯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DDA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

○ 수천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약속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DDA 농업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다가오는 쌀 재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임.

○ 지난 2월 정부는 WTO에 제출한 개방 계획서에서 전략품목(쌀, 마늘 등)의 관세를 6.7%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 관세화 개방을 전제로 한 것임.

4. 정부의 대책(FTA특별법)과 문제점

1) 노무현 정부는 '선대책마련 후 국회비준' 원칙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2) FTA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 경영이양 등 지원
- 폐업지원
- 피해산업 긴급구제
- 농업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농업위원회]구성 및 운영

3) 정부의 FTA특별법의 문제점

① FTA특별법은 반농민적이며 탈농을 유도하는 법임.

②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와 WTO출범과 함께 [WTO이행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사문화시킴.

-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체제에서 정부통계를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9.7%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2%가 증가함.

③ 특별법의 제정방향이 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④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인 축산, 과수,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농촌인력의 급격한 탈농을 부추기고 있음.

⑤ FTA특별법은 농업축소, 탈농을 위한 농업구조조정법, 농민과 국민을 현혹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무마키려는 여론용 법임.

농가부채 현황과 과제

2003. 3.

1. 농가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

1) UR협정 이후 농축산물 수입 급증과 가격 폭락으로 발생되었음.

■ UR협정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증가하여 세계 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하였으며(계속적으로 수입액 증가 추세)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대표적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95년 UR협상 이후 급격한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 변화 추이 > **(단위: 원)**

구분	마늘 (1접)	토마토 (15kg)	수박 (5kg)	감귤 (15kg)	포도 (10kg)	양소 (500kg)	농촌임금 (남)
1980년	5,994	3,312	1,228	5,376	5,847	1,303,865	7,288
1985년	6,353	3,952	1,047	5,285	6,766	1,252,650	9,695
1990년	5,848	9,016	3,461	7,991	8,137	2,262,750	18,563
1995년	7,865	8,936	3,877	16,651	19,224	3,322,590	33,237
1999.3	8,203	6,092	3,124	21,819	12,293	2,127,000	38,213
2000.3	3,912	895	2,629	12,842	12,228	2,698,000	47,239

*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년 5월호)

<95년과 2000년, 주요품의 가격비교>

구분	마늘1접	토마토15kg	수박5kg	감귤15kg	경유1리터	휘발유1리터
1995년	7,865원	8,936원	3,877원	16,651원	239원	598원
2000년 3월	3,912원	8,950원	2,629원	12,842원	571원	1,214원

■ 또한 UR협정 이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감축 등은 주요 작목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곧 바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짐.

2)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서 비롯됨.

■ UR협상이후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주로 30-5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자금이 투자되었음.

그러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IMF사태로 인한 농자재값 폭등과 소비감소 등으로 농가들은 투자된 자금은 커녕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농민들은 융자자금의 이자마저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임.

■ 또한 농업수익률이 3%정도 밖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IMF이후 16-18%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고금리를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으며 경영수지악화로 인하여 이자부담 및 상환을 위해 또다시 고금리의

상호금융자금을 빌려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됨.

3)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가부채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

■ 생명, 식량, 환경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을 지속·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농가부채 해결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농업기반공사는 사회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경제효과와 홍수조절효과, 대기와 수질의 정화 및 토양보전 등의 환경보전 효과, 농촌 경관 보전과 전통 문화 보전, 휴양 및 레저 공간 제공 효과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5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함.

- IMF하에서 재벌, 금융, 중소기업에 부채탕감 및 구조조정비로 100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취했듯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4) 농가부채 해결은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의 공약이었음.

■ **민주당 농정공약 중 농가부채 부분**

> **" (농어업인 부채경감)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은 줄이고, 각종 직접지불제를 임기내에 농업 소득의 20%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 **농가부채 관련 공약 주요내용**

- 기 대출된 정책자금은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금리는 1.5%로 낮추겠습니다.
- 상호금융자금·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에 대하여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 회생프로그램에 의하여 상기자금을 정책자금처럼 장기분할하고,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 농업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하여 연대 보증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예산의 20% 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농가부채 현황

<연도별 농가부채 현황 > **(단위 : 천원)**

	92	93	94	95	96	97	98	99	01	02
농가부채	5,683	6,828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20,207	20,376
생산성부채	4,094	5,256	6,191	7,331	9,136	9,781	12,958	14,054	15,159	15,282
가계성부채	977	1,056	1,054	1,110	1,458	1,775	2,653	3,181	3,882	4,015
차임금상환 등	612	516	640	722	1,140	1,456	1,400	1,299	1,166	1,079
농가소득	14,515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23,907

* 자료 : 2002년 국정감사 허태열의원 자료

< 영농형태별 비교 > (단위 : 천원, %)

	전 국	논벼 농가	과수 농가	채소 농가	특작 농가	축산 농가	전작 농가	화훼 농가
농가구성비[1]	100.0	56.6	10.8	18.5	2.9	5.6	4.6	0.7
농 가 소 득	23,907	20,857	28,877	21,388	32,705	27,078	16,810	15,958
가 계 비	18,458	16,697	19,861	17,816	15,370	18,304	18,391	17,046
자 산[2]	166,765	156,752	210,406	143,310	128,781	206,748	127,715	142,612
부 채	**20,376**	**17,664**	**28,148**	**24,001**	**25,575**	**26,674**	**15,831**	**39,557**
- 부채/소득	85.2	84.7	97.5	112.2	78.2	98.5	94.2	247.9
- 부채/자산	12.2	11.3	13.4	16.7	19.9	12.9	12.4	27.7

< 경지규모별 비교 > (단위 : 천원, %)

	전 국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 3.0ha	3.0~ 5.0ha	5.0ha 이상
농가구성비[1]	100.0	35.3	27.2	15.6	8.9	7.4	4.0	1.6
농 가 소 득	23,907	18,380	19,865	23,259	26,895	30,230	36,459	50,205
가 계 비	18,458	16,100	17,167	17,974	20,179	21,520	23,194	27,569
자 산[2]	166,765	123,083	141,757	167,670	187,683	204,617	244,667	285,569
부 채	**20,376**	**12,734**	**15,341**	**17,094**	**22,642**	**26,399**	**45,343**	**77,783**
- 부채/소득	85.2	69.3	77.2	73.5	84.2	87.3	124.4	154.9
- 부채/자산	12.2	10.3	10.8	10.2	12.1	12.9	18.5	27.2

< 경영주 연령별 비교 > (단위 : 천원, %)

	전 국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농가구성비[1]	100.0	4.4	15.9	24.1	37.2	18.2
농 가 소 득	23,907	27,791	26,207	27,125	21,455	15,354
가 계 비	18,458	18,357	21,297	22,163	16,790	12,379
자 산[2]	166,765	188,575	179,204	189,312	164,598	109,697
부 채	**20,376**	**49,845**	**39,241**	**24,697**	**12,965**	**5,373**
- 부채/소득	85.2	179.4	149.7	91.0	60.4	35.0
- 부채/자산	12.2	26.4	21.9	13.0	7.9	4.9

주 1) 2001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영농형태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 농가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 (단위 : %)

부채규모	'97	'98	'99	'00	'01
부채없는 농가	20.4	16.6	22.4	24.1	26.0
200만원 미만	17.7	14.9	10.6	9.3	8.2
200~400	10.2	8.8	7.8	6.4	6.6
400~600	6.0	6.4	5.6	5.0	5.0
600~800	4.5	4.9	4.3	3.7	3.5
800~1,000	4.2	3.7	3.7	3.3	3.2
1,000~2,000	14.5	15.4	14.6	14.8	13.9
2,000~3,000	7.7	10.4	9.9	9.9	9.3
3,000~4,000	4.6	6.0	5.9	6.6	6.7
4,000~5,000	2.7	3.9	4.5	3.8	4.5
5,000만원 이상	7.5	9.0	10.7	13.1	13.2

* '97년 평균농가부채(13,012천원) 이상인 농가 32.4%
* '98년 평균농가부채(17,011천원) 이상인 농가 33.2%
* '99년 평균농가부채(18,535천원) 이상인 농가 33.1%
* '00년 평균농가부채(20,207천원) 이상인 농가 32.3%
* '01년 평균농가부채(20,376천원) 이상인 농가 32.5%
* 자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가부채특별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 농가부채 총액은 2000년 7월말을 기준, 농협대출금을 파악할 때 39조 7,565억원임.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40~50조원 규모라고 말하고 있음.

■ 2001년도까지 농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259% 증가했으며 이중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성 부채는 이보다 많은 273%가 증가하였음.

■ 김대중 정권시기 중 농가소득은 2% 증가하였으나 농가부채는 57% 증가함.

■ 특히 영농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농가부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구분	전국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	5.0ha이상
농가부채	20,376	12734	15341	17094	22642	26399	45343	77783
부채/소득	85.2	69.3	77.2	73.5	84.2	87.3	124.4	154.9
부채/자산	12.2	10.3	10.8	10.2	12.1	12.9	18.5	27.2

* 자료 : 2002년 국정감사 허태열의원 자료

농가소득으로 가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	농가소득으로 부채상환이 불가능한 농가
39.4%	49.9%

* 자료 : '00년 국정감사 주진우 의원 제출자료, '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 농가부채에 관한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지난 98년,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농가부채 실태조사에서 통계청 표본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조사

를 거부한 적도 있음.

■ 특히 올해 7월부터 지난 2000년 지원된 1조8000억원, 2001년 지원된 1조원가운데 7000억원이 집중적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하나 농민들의 여건은 더욱 악화됨.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3. 지난 시기 정부가 추진한 농가부채대책 경과

◆ 98년~99년

· 정책자금 금리인하 6.5%→5% (IMF이전 5%였으나 IMF이후 6.5%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된 것뿐임.)
· 중장기 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 (2년이후 일시상환)
· 특별경영자금 2조 1500억 지원 (6.5%로 2년후 상환)

◆ 2000년

· 상호금융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 6.5%로 대체
· 2000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 1조 8천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6.5%로 2년거치 3년)
· 연대보증으로 대출한 농업용자금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

◆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농가부채특별법) 제정

· 2000년 12월 14일 국회 통과해 01년 1월 8일 공포함.
· 01,02,03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리 5%, 2년거치 5년분할로 상환하도록 함.
· 상호금융 관련해서는 농업목적 자금 18조5천억(99년 12월말) 중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3조 1천억원과 연대보증지원 자금 5500억원을 제외한 14조 8천5백억원의 67.3%에 해당하는 10조원을 5년간 연리 6.5%로 대체지원함. (5년거치 일시상환)
· 총 1천700억원의 연체이자 경감과 연대보증인에 특별자금 총 5천500억원, 금리 5%를 지원하고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하도록 함.

◆ 2002년 농가부채특별법 재개정

·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인하, 연대보증 피해자금 금리를 연 5%~연 3%로 인하함.
· 상호금융저리 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현행 6.5%로 동결하고 부채대책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하기로 함.

◆ 2003년

· 2003년 1월 8월 원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였으나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됨.
· 재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특별히 상환의 연기가 필요한 농민이 이전에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4년 거치한 후 5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임.

◆ 노무현정권 인수위 (안)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 도입
· 정상 상환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자금제 정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 확대

4.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당면 과제

1) 농민들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난 시기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은 대부분 단기상환 융자, 대출 등이 대부분으로 농가부채를 더욱 늘리는 결과만 가져옴. 또한 연대 보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서 농가들의 연쇄 파산을 방치함.

2) 따라서 노무현 새정부는 공약대로 대출된 정책자금은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금리는 1.5%로 낮추어야 함.

3) 또한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농가부채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농가부채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함.

- 연체된 이자 전액 탕감.
- 상호금융, 정책자금 장기상환 유예.
-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하고,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 회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특히 농업수익률이 3%도 안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책자금 금리는 1~1.5%, 상호금융 금리는 5~6% 수준(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으로 인하하는 등 농업금융을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함.

메모장